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UCI]I804:24011-200000239543

2010년 2월

석사 학위 논문

조선시대의 사관과 사관정신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신문방송학과

나 의 갑

조선시대의 사관과 사관정신 연구

A Study on Chronicler and Chronicler's Consciousness in the Chosun Dynasty

2010년 2월 25일

조선대학교 대학원

신문방송학과

나 의 갑

조선시대의 사관과 사관정신 연구

지도교수 박 선 희

이 논문을 신문방송학과 석사학위 신청 논문으로 제출함

2009년 10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신문방송학과

나 의 갑

나의갑의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인

2009년 11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목 차

제1장 서 론 ····· 1
제1절 문제 제기 및 연구 목적 ····· 1
제2절 논문의 구성 ····· 6

제2장 조선시대의 사관제도 ····· 8
제1절 사관제도의 성립 ····· 8
1. 사관제도의 연원 ····· 8
2. 우리나라 사관제도 변천사 ····· 9
제2절 사관의 선발 ····· 10
1. 자격 요건 ····· 10
2. 선발 절차 ····· 12
제3절 사관의 직제와 특권 ····· 12
1. 예문관의 전임사관 ····· 13
2. 춘추관의 겸임사관 ····· 16
3. 사관의 특권 ····· 18

제3장 사관정신의 형성 배경 ····· 20
제1절 성리학적 역사인식 ····· 20
제2절 춘추필법으로서의 역사 기록 ····· 22

제4장 사관의 저항 유형에 따른 사관정신 분석 ····· 24
제1절 입시범위 확대 요구 및 실현 ····· 24
1. 정전 및 편전 등 입참 논쟁 ····· 25

2. 국청 진출 ····· 31
3. 정청 진입 ····· 33
4. 비공식 정사 및 행사 참여 다툼 ····· 37
1) 비공식 정사 ····· 37
2) 비공식 행사 ····· 40
제2절 사초 작성여건 개선 요청 ····· 42
제3절 승지-사관 갈등관계 ····· 46
제4절 사초 및 실록 열람과 2대 필화사건 ····· 49
1. 사초 및 실록 열람 거부 ····· 49
2. 2대 필화사건으로 본 사관정신 ····· 52
1) 기명제와 민수사옥 ····· 52
2) 기억운동과 무오사화 ····· 55

제5장 결 론 ····· 64
제1절 연구의 요약 ····· 64
제2절 조선 사관 및 사관정신이 우리 언론에 주는 함의 ····· 68

참고문헌

표 목 차

<표 1> 예문관 ····· 13
<표 2> 춘추관 ····· 17

ABSTRACT

A Study on Chronicler and Chronicler's Consciousness in the Chosun Dynasty

Na Eui Kap
Advisor: Prof. Park Sun Hee, Ph.D.
Department of Journalism & Communications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ssify and analyze resistance cases of chroniclers in the Chosun Dynasty in the frame of 'chronicler's consciousness' and suggest it as the model of Capaism. This study was motivated by the belief that Korean media at a great crisis could be restored if it was given a transfusion of chronicler's consciousness in the Chosun Dynasty. Although chroniclers in the Chosun Dynasty had very poor coverage surroundings beyond comparison with today's journalists, they produced 『Joseon Wangjo Silok(the Annals of Chosun Dynasty』 recognized as the flower of 'the Memory of the World' and gave the mirror of history to posterity.

Chroniclers in the Chosun Dynasty showed chronicler's consciousness sometimes by sacrificing their lives with the pen platform of unbiased writing and stern criticism. They showed strictness that recorded King's request 'never for recording'. Their pen believed that 'writing correctly as it was(unbiased writing)' was the strongest and rightest power of the pen.

Chroniclers were as an awn to the king because their entrance to the

political field itself functioned as the check of royal authority.

Although the increase in the scope of entrance was ended in a victory for chroniclers in King Jungjong, the process was a thorny path. They had to gain the 'pass' to the king's audience hall and private quarters where political affairs were made, public hearing where suspects charged with grave crimes were questioned, and a government office dealing with personnel administration with blood and sweat. The entrance to king's audience hall and government office is a problem for today's journalists to solve.

Chroniclers also presented themselves surely in informal meetings such as the exclusive meeting with the king at the request of subjects, an audience with the king at the request of the king, the honored visit by the king, or art performance, making the king and powerful vassals annoyed. It originated from the perception that there was no a private field in the king's words and deeds. The exclusive meeting and audience are accepted as formal meetings in the contemporary media.

The chronicler leaving the greatest footprint in the process of the dispute of expanding the scope of entrance was Min In-Saeng. He went into exile because he peeped into the room to cover of King Taejong's private quarters and appeared in the king's hunting ground, hiding his face. He believed that "there is only the sky(people) on the chronicler". Then, is 'people' 'the sky' to today's journalists?

Chroniclers greatly strived to improve conditions of writing the outline of history. Although they made a ceaseless efforts to change "last in-first out" to "last in-last out" to enter the king's audience hall, they failed. But they were rewarded with good fruits in the posture of writing the outline of history that "the chroniclers should write from their seat" 100 years after the

foundation of the Chosun Dynasty.

'Minsu Saok', one of two representative serious slips of the pen during the Chosun Dynasty, was the affair that chronicler, Minsu rewrote the outline of history partially for fear of damaging from his outline of history including his name but his consciousness of unbiased writing that scolded King SMuoejo's mutual assistance through the outline of history should be reevaluated. It should be noted that Muo Sahwa, the greatest slip of the pen in the Chosun Dynasty was re-illuminated by 'memory movement' by Sarim(Confucianism). 「Jouijemun」 written by Kim Jong-Jik was the starting point of 'the memory movement' and it was expanded from the opposite to the Court, leading to Muo Sahwa. In King Seongjong, the fact that the preceeding chronicler, Kim Il-Son put 「Jouijemun」 in the outline of history was found in the course of compiling 『Seongjong Silok(the Annals of King Seongjong)』 and Kim Il-Son was accused of high treason. He answered that "recording all things was the traditional obligation of chroniclers" by King Yeonsan's hearing and died a glorious death as the symbol of chroniclers in the Chosun Dynasty.

Like this, chroniclers in the Chosun Dynasty had a firm faith system as a chronicler that 'the territory of chronicler recording history is unlimited' with values that 'no exceptions before history'.

Considering that the crisis of Capaism has brought about the retreat of Korean media, which in turn has set back Korean democracy, the only effective means to cope with the crisis is 'to build Capaism'. According to empiricism, if Capaism is built strongly and soundly, such a crisis can be plowed through. Again it is a great wish to make Capaism stand by grafting chronicler's consciousness in the Chosun Dynasty into today's Capaism.

제1장 서 론

제1절 문제 제기 및 연구 목적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은 시조인 태조부터 철종에 이르기까지 25대 472년(1392~1863) 간의 역사를 국왕별로 연·월·일 순서에 따라 기록한 조선왕조의 공식 사서(史書)다. 이 실록은 총 1,893권 888책에 이르는 방대한 기록으로, 조선시대의 정치·외교·군사·제도·법률·경제·산업·교통·통신·사회·풍속·미술·공예·종교 등 각 분야의 역사적 사실을 담고 있다.

중국, 일본, 베트남 등 유교문화권 나라에도 실록이 있으나, 조선의 그것은 한 왕조의 역사적 기록으로는 가장 긴 시간에 걸쳐 있다. 중국 실록인『대청역조실록(大淸歷朝實錄)』은 296년,『황명실록(皇明實錄)』은 260년으로, 472년이라는 역사 기록은 세계에서도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 또 실록은 국왕에서 서민까지 조선인들의 일상생활을 소상하게 기록하는 등 내용면에서도 다른 나라의 실록보다 충실하다. 진실성과 신빙성 또한 매우 높다. 편찬된 실록을 국왕마저 열람할 수 없도록 비밀주의 원칙을 철저하게 지킨 나라는 조선뿐이었기 때문이다.[1] 유네스코는『조선왕조실록』의 이런 가치를 인정해 1997년 10월 1일 실록을 '세계기록유산'으로 선정했다.

『조선왕조실록』은 일시에 편찬한 것이 아니라 국왕이 사망하면 임시기구인 실록청(實錄廳)을 설치하고 그 국왕대의 실록을 만들었다. 실록 편찬 때 가장 중요시했던 자료는 사초(史草)였으며, 그 다음은 각 관청의 업무일지에 해당하는 시행사(施行事)였다. 사초도 사관(史官)이 작성했으며, 시행사 또한 사관이 기록했다. 이처럼 실록의 중심에는 사관이 자리하고 있다.

군주의 언행과 정치, 백관의 행적 등 모든 시정(時政)의 기록을 맡아보던 관료였던 사관은 업무 성격상 전임사관(專任史官)과 겸임사관(兼任史官)으로 구분된다. 예문관(藝文館) 소속인 전임사관(8명)은 사초 작성을 전담했다. 춘추관(春秋館) 소속의 겸임사관은 모두 주요 관청의 관원들이 겸직했으며, 겸임사관 52명 중 45명은 주로 시행사를 기록했다.

---

1) 김경수,『언론이 조선왕조 500년을 일구었다』, 도서출판 가람기획, 2000년, 184쪽.

바른 역사를 남기겠다는 사관의 직필(直筆)은『조선왕조실록』곳곳에 꼿꼿하게 살아 있다. 사관은 자신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국왕한테도 비판의 필봉을 피해 가지 않았으며, 국왕에게 간언(諫言)을 하지 않고 비위나 맞추는 권신(權臣)이 있으면 "종기를 빨고 치질을 핥아가며 아첨하는 무리"라고 가차 없이 질타했다.[2)]

직필과 함께 역사 건설자로서의 기개(氣槪)·역사의식·활동철학(operating philosophy)·난관 극복·취재 영역 확보를 위한 국왕에 대한 저항 등을 한데 묶어 '사관정신(史官精神)'으로 표현할 수 있다면, 이 사관정신 때문에 화(禍)를 자초한 조선 사관은 부지기수였다. 그중 직필은 사관정신의 근간을 이루고 있으며, 국왕 등에 대한 대표적인 저항 사례로는 입시(入侍) 범위 확대 요구(正殿 및 便殿 등 입참 논쟁, 鞫廳 및 政廳 진출 시도, 비공식 政事 및 행사 참가 논란)·사초 작성여건 개선 요청·사관-승지 다툼·사초 및 실록 열람 거부·사초 기명제(記名制) 반대·'기억운동' 등을 들 수 있다. 그런 만큼 '세계기록문화의 꽃'으로 인정받은『조선왕조실록』은 직필과 저항으로 점철된 사관정신의 소출(所出)이라 할 수 있다.

사관은 관리였지만 여러모로 현대 언론의 기자와 닮았다. 사초의 작성이 '날마다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사초는 '날마다 쓰는 오늘날의 기사'와 다름없으며, 그러므로 사관은 '날마다 기사 쓰는 일을 업(業)'으로 하는 현대의 기자와 진배없다.

사관은 현대의 취재기자와 편집기자까지도 겸했다. 정치현장 등에 들어가려다 내쫓김을 당할 경우 기를 쓰고 들어가 취재하는 투혼을 발휘했는가 하면, 춘추관에 제출된 사초와 시행사 등을 연·월·일 순서로 묶어 시정기(時政記)를 만들어내고, 실록을 편찬하는 일도 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조선의 사관은 '나라가 선발한 현대의 기자'라 할 수 있으며, 현대의 기자는 각 언론사가 채용한 '조선의 사관'에 해당된다.

사관은 현대 언론의 기사처럼 당장 효과가 발생하는 환경 감시자 역할도 했다. 사관이 국정현장 등에 붓과 함께 들어가 역사의 눈으로 감시하는 것 자체가 권력에 대한 제어 기능이었기 때문이다.

사관이나 기자나 '무엇을 쓸 것인가'라는 기사가치(newsworthiness) 측정의 눈높이가 거의 일치한다는 점도 사관과 기자를 동일 선상에 올려놓을 수 있는 요건이 된다. 가치 측정 면에서 볼 때 사관이 사초에 올리는 사실(fact)이나 기자가 기사화하는 사실이 엇비슷하다는 말이다. 당시 신문이 발행되었더라면 사관이 작성한 사초는 매일같이 정치면·경제면·사회면·문화면 등에 비중 있게 처리되었을 것이다.

---

2) 김용삼,「조선시대의 사관 이야기」,『월간조선』, 2007년 5월호.

또 기자는 '일일(日日) 역사가'라 일컬어지고 있는 만큼, 사관과 마찬가지로 '역사의 길'을 가지 않으면 안 된다. 모든 기사가 역사의 자료가 되고 있으므로 모든 기사에 역사적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국 언론이 중병을 앓고 있다는 진단은 오래전에 내려졌다. 기사의 위기, 기자의 위기, 공론장(public sphere)으로서의 저널리즘 위기 등 3대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는 진단[3]이 그것이다. 3대 위기 중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위기는 '기사의 위기'다. 현대인이 인식하는 현실은 거의 예외 없이 다양한 대중매체들이 기사라는 프리즘을 통해 규정하는 현실이다. 개인들이 직접 경험할 수 없는 대상인 국제문제나 정치현실 등은 더욱 그러하다. 더 중요한 것은, 모든 매체의 소비자는 매체가 규정한 현실을 토대로 자신의 다음 행동방향을 결정한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언론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주장된 사실에 대한 검증'인 것이며, 한국 언론의 경우 이 검증장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기사의 위기'를 구성하는 또 하나의 요소는 언론사가 정파성(政派性) 입장을 견지하며 보도대상 사실을 선택적으로 포함시키거나 배제하는 편집관행이 광범위하게 존재한다는 지적이다. 대표적인 보도대상 영역은 대통령, 한미관계, 북한 및 북한 핵, 경기회복 관련 기사 등이다. 언론사의 정파성은 각 언론사의 사설이나 칼럼 등 의견기사와 맞물리면서 특정 신문을 보수신문 또는 진보신문으로 규정하는 기능을 해왔고, 독자들도 자연스레 그런 이념적 편가름을 받아들여 이 땅의 국민들은 지금 두 쪽으로 나뉘어 대결양상을 보이고 있다.

'기자의 위기'의 첫 번째 요소는 언론윤리의 핵심인 기자의 처신에서 비롯되는 문제다. 촌지문제와 정치 및 경제 분야에서 관찰되는 부적절한 유착의 관행 등이 그에 해당한다. 기자사회의 대표적인 치부인 '촌지'가 암거래되고 있고, "누구누구는 아무개의 장학생"이라는 말이 유통되고 있다 함은 기자들의 '부적절한 처신'이 현재 진행형임을 알게 해준다. '기자의 위기'의 두 번째 요소는 취재·보도 과정에서의 투명성·정직성 등 비윤리성에 관한 문제다. 기사를 작성하는 과정에 취재원을 얼마나 '충실하게' 밝혔는가, 해당 기사의 취재경로를 언론 수용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친절하게' 밝혔는가 등의 문제가 그것이다.

위에서 제시한 2대 위기 상황은 자동적으로 '공론장으로서의 저널리즘 위기'로 귀결된다. 저널리즘은 현대사회의 중심 공공영역이다. 국가와 개인 사이에서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해당하는 문제를 동등한 자격으로 토론하는 특별한 마당이라는

3) 이재경, 「한국 저널리즘의 3가지 위기」, 『신문과 방송』, 2004년 4월호, 한국언론재단, 241쪽.

뜻이다. 그러나 현재 한국사회에서는 이런 공공영역이 지속적으로 상업화하거나 파당화, 또는 사유화하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

이제라도 언론은 본래의 자리로 복귀하려는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 언론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 전체가 '언론·공공영역 가치·언론의 존재 원칙'에 대해 함께 성찰하고 그로부터 언론에 관한 기본 철학과 행위 기준을 이끌어내야 하며,[4] 무엇보다 기자 개개인의 참회를 통한 '기자정신(記者精神) 세우기'로 이 작업의 토대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대구·경북지역 인터넷신문인『평화뉴스』에 게재된「기자들의 고백」칼럼을 분석한 것을 보면 "기자정신 부재에 대한 반성이 가장 많았다. 지사적(志士的) 기자가 되지 못하는 원인을 올바른 기자정신의 부재로 파악하고 기자의식 회복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5]고 밝히고 있는데, 이 또한 '기자정신 세우기'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관료조직으로 보면 '아랫것'에 지나지 않는 사관이 정치·행정 영역 등을 드나들면서 온갖 압박을 받아가며 때로는 목숨까지 바쳐가며『조선왕조실록』이란 역사기록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이나, 실록 편찬 과정에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원칙을 세워나갈 수 있었던 것은 사관의 역사의식, 즉 사관정신을 고려하지 않고는 설명할 수 없다.[6] 조선 사관은 아주 열악한 취재환경에서도 '성역 없는 취재', '성역 없는 사초 작성'을 위해 끊임없이 저항해왔음이『조선왕조실록』을 통해 확인되고 있다.

오늘의 한국 기자는 어떠한가. 언론의 자유라는 걸 완벽에 가깝게 누리고 있는데도 '성역 있는 취재', '성역 있는 기사'란 비판을 적잖이 듣고 있음은 언론 수용자를 모독하는 처사나 다름없다 할 것이다.

사관의 임용·직제·임무 등 사관제도에 대한 그동안의 연구는 만족할만한 수준에 이르러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관정신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소략(疏略)해 미개척 분야로 남아 있는 것 같다. 위에서 적시한 것처럼, 사관-기자가 기능적 측면에서 등식 관계가 성립되고 있으므로 사관정신 쪽에서 기자정신의 자양분을 구해올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연구의 주안점이 사관제도에서 사관정신 쪽으로 옮겨가야 하는데도 학계나 언론계의 관심은 그리 크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조선 사관정신의 형성 배경과 사관의 저항 사례에 따른 기록정신 등을 깊이 있게 천착해 그 현재적 의의 등을 도출해내는 작업이 요구되고 있으나, 아직껏 눈에 띄는 성

4) 이재경, 위의 논문, 245쪽.
5) 구교태,「현장 포커스」,『신문과 방송』, 2005년 4월호, 한국언론재단, 134쪽.
6) 오항녕,『한국 사관제도 성립사』, 일지사, 2009년, 404쪽.

과물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기존 연구물 가운데는 사관정신에 해당하는 내용(사례)들이 상당량 존재하지만, 그것을 '사관정신'으로 처리한 뒤, 오늘의 기자정신으로 불러내어 한국 언론병을 치유해보려는 연구물 또한 찾아보기 힘들다.

조선왕조는 언론과 역사를 '춘추(春秋)'라는 하나의 고리로 여겼던 선비의 역사관에 의해 지탱해왔다. 언론을 당대의 커뮤니케이션으로 보았다면, 역사는 먼 미래를 위한 커뮤니케이션으로 보았던 것이다. 과거를 통해 미래를 조명하는 제도적 장치가 사관제도[7]였으므로 사관은 후대와의 대화 담당자라 할 수 있다. 사관은 이 대화를 통해 후대와 접점을 이루면서 국왕과 관리들의 권력 남용을 견제했다는 점에서 그들의 '사초 취재 및 작성 행위' 등도 대간(臺諫)의 언론행위처럼 언론활동의 하나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대간은 관료의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사헌부(司憲府)의 대관(臺官)과 국왕의 독주를 간쟁(諫諍)하는 사간원(司諫院)의 간관(諫官)을 통칭하는 것으로, 대간을 언관(言官)으로 불렀던 것은 그 기능에서 언론활동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컸기 때문이다.[8] 언관만으로는 국왕의 견제와 관료의 부정부패를 막을 수 없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사관제도가 도입되었다[9]는 데 착안한다면, 사관의 사초 취재행위 등이 언론활동의 범주에 포함되어야 할 이유는 충분하다.

기실, 사관은 언관보다 더 두려운 존재였다. 왜냐하면, 언관의 언론활동이 직접적으로 일시적인 견제 기능을 갖고 있는 데 비해, 사관의 언론활동은 간접적이긴 하지만 영속적으로 기능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언관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때에도 사관은 계속 왕권과 권신을 압박할 수 있었다.[10] 사관은 자신의 견제 기능이 간접적이란 점을 이용해 언관이 감히 탄핵하지 못하는 인물까지도 과감하게 비판했으며, 연산군 때처럼 언관의 기능이 완전히 마비된 상황에서도 붓을 놓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함에도 학계는 사관의 이 같은 언론행위를 단순히 '역사 기록자'의 범주에만 가두어두려 하고 있어, 사관이 언론 주체의 하나로 등장하는 길을 열어주지 않고 있다. 더욱이 우리는 언론사상사적(言論思想史的) 관점에서 사관 및 사관정신을 보지 못해, 오랜 시간에 걸쳐 온갖 시련을 극복해가며 일구어온 우리의 정신유산을 등한시해왔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조선 사관의 사관정신 속에 그 어떤 무엇이 스며들어 있는지 제대로 들춰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 논문은 이런

---

7) 최봉영, 『조선시대의 유교문화』, 사계절문화사, 1997년, 197쪽.
8) 최승희, 『조선 초기 언관·언론 연구』, 한국문화연구소, 1976년, 66쪽.
9) 이성무, 『조선의 부정부패 어떻게 막았을까』, 청아출판사, 2000년, 7쪽.
10) 차장섭, 「조선 전기의 사관」, 『경북사학』 제6집, 경북대학교 사학과, 1983년, 85쪽.

것들에 대한 반성과 성찰로부터 출발한다.

이 논문의 주요 목적 중의 하나는 직필과 함께 사관정신의 핵을 이루는 사관의 저항 사례 등을 '사관정신'이란 틀 속에서 유형별로 분류 및 분석하고 그것을 기자정신의 전범(典範)으로 제시하려는 데 있다.

이 논문의 또 다른 목적은 한국 자유언론사상의 모태를 어디에서 찾아야 할 것인가를 짚어보고, 한국 언론사상사 측면에서 조선 사관정신의 위치가 어디쯤인지 규명하는 한편, 사관정신을 어떻게 계승·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과제를 던지려는 데 있다.

제2절 논문의 구성

이 논문의 본문은 크게 3개의 장(章)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2장은 조선 사관 및 사관정신의 실체에 접근하기 위한 예비단계의 서술로, 사관제도의 연원 및 변천사와 사관의 자격 요건 및 선발 절차, 사관의 직제와 특권 등에 대해 개괄적으로 살펴본다.

제3장은 조선 사관정신의 형성 배경을 성리학적(性理學的) 역사인식과 춘추필법(春秋筆法)으로서의 역사 기록으로 나누어 논한다.

제4장에서는 모두 4절로 나누어 조선 사관의 저항 유형에 따라 사관정신을 다각적으로 분석한다. 취재 영역인 입시 범위를 둘러싸고 사관-국왕 간에 벌인 다툼에 대해 논하는 제1절은 군주의 '날카로운 방패'인 원천봉쇄에 맞서 '무딘 창'을 부단히 던져가며 기록의 영토를 확장해나가는 사관의 도전정신을 담는다. 정전 및 편전 등 입참 논쟁에 이어, 국사범(國事犯)을 심문하는 국청과 인사행정을 다루는 정청 진출 과정에서 발현된 사관정신에 관해 논술한다. 국청과 정청은 현대 언론도 개척하지 못한 성역 중 성역이다. 또 독대(獨對), 인견(引見) 등 비공식 정사(政事)와 행행(行幸), 예연(禮宴) 등 비공식 행사를 가리지 않고 군주가 등장하는 자리라면 어디든지 나아가 취재하고자 했던 기록정신을 짚는다.

제2절에서는 입시 순서를 비롯해 입시 위치 및 입시 자세 등 사초 작성여건 개선 요청에 대해, 제3절에선 승지-사관의 대립에 따른 사관정신에 관해 서술한다.

제4절은 조선시대 2대 필화사건인 민수사옥(閔粹史獄)과 무오사화(戊午士禍)를 다루되, 사초 기명제(記名制)가 도화선이 된 민수사옥의 경우 그 긍정적 측면을 강

조하고, 김종직(金宗直)과 김일손(金馹孫) 등 사림의 '기억운동'이 피바람을 불러온 무오사화에 대해서는 사림정신과 함께 사관정신을 들여다본다.

제5장은 이 논문의 핵심을 요약하고 조선 사관의 사관정신이 한국 언론에 주는 함의(含意)를 살핀 뒤, 앞으로의 과제를 제시하는 것으로 결론에 대신하고자 한다.

제2장 조선시대의 사관제도

제1절 사관제도의 성립

1. 사관제도의 연원

사관제도는 중국에 그 연원을 두고 있다. 전설의 시대인 황제(黃帝) 때부터 공갑(孔甲)·창힐(倉頡)·저송(沮誦) 등으로 불리는 사관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나, 그 실재는 명확하지 않다.[11]

은(殷)나라 때에는 '사(史)'와 '작책(作冊)'이란 관직명이 있었던 것으로 미뤄보아 역사를 기록한 흔적을 짐작할 수 있다. 은나라에 이어 주(周)나라에도 태사(太史)·소사(小史)·내사(內史)·외사(外史)·어사(御史)·좌사(左史)·우사(右史) 등이 있었는데, 이들 관직에서 사관의 존재가 확인된다.[12]

주나라의 국력이 쇠약해지면서 각지의 제후들이 난립한 춘추전국시대에 들어와서는 사관의 직필은 신성한 의무로 받아들여진다. 이 시대에는 엄정한 비판을 생명처럼 여기고 대의명분(大義名分)을 밝히는 공자(孔子)의 춘추필법을 모범으로 삼는다.[13]

진(秦)나라 시황(始皇帝) 때에는 정치에 대한 비판을 금하려고 책을 불사르고 학자들을 산 채로 구덩이에 묻어 죽인 분서갱유(焚書坑儒)로 사관도 설 자리를 잃는다.

이후 역사 기록만을 담당하는 사관은 한(漢)나라 무제(無帝) 때 태사령(太史令)으로 임명된 사마천(司馬遷)으로부터 비롯된다. 이때부터 사관은 한 집안에서 대대로 세습하면서 역사를 기록하는 일이 많았는데, 이를 가학(家學)이라 한다. 사마천은 그의 역작『사기(史記)』를 혼자 저술한 것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 사마담(司馬談)에 이어 2대에 걸쳐 완성한다. 반고(班固) 또한 아버지한테 이어받은『한서(漢書)』를 완전히 마치지 못하고 죽게 되자 그의 누이동생이 마무리한다.[14]

---

11) 김경수,『조선시대의 사관 연구』, 국학자료원, 1998년, 14쪽.
12) 박홍갑,『사관 위에는 하늘이 있소이다』, 도서출판 가람기획, 1999년, 14쪽
13) 박홍갑, 위의 책, 50쪽.

당나라는 비서성 저작국에 따로 사관(史館)을 두어 재상이 감수국사(監修國史)를 겸하고 겸직사관(兼職史官)을 둔다.『사통(史通)』의 저자 유지기(劉知幾)는 재상의 감수국사 겸직제가 직필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판단에서 "재상이 역사 편찬에 참여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15]고 비판했는데, 조선도 당나라와 유사한 '재상 감수국사 겸직제'를 채택함에 따라『조선왕조실록』을 편찬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을 드러내게 된다.

2. 우리나라 사관제도 변천사[16]

우리나라의 경우 삼국시대에 사서의 편찬이 이뤄졌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사관이 있었을 것으로 짐작되긴 하지만 명확한 기록은 없다.『삼국사기』에 고구려 영양왕대『유기(留記)』, 백제 근초고왕대『서기(書記)』, 신라 진흥왕대『국사(國史)』 등의 사서가 편찬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어 사관의 존재가 상정될 뿐이다.

우리나라에 사관이 등장한 것은 고려 초기였다. 광종 때 당나라의 사관제도를 받아들여 역사찬술기구인 사관(史館)을 설치한 것이다. 당시 사관의 직제는 2품 이상 재상급 관료가 겸직하는 감수국사(문하시중)·수국사(修國史)·동수국사(同修國史)와 3품 이하 6품 이상의 문한관이 겸직하면서 역사를 찬술하는 수찬관(修撰官), 현대의 기자처럼 기사를 작성하는 직사관(直史館)으로 편성했으며, 직사관만 겸임이 아니고 전임이었다.

고려의 사관(史館)은 무신 집권기와 원(元)나라 간섭기를 거치면서 수차례 명칭이 바뀌고 기능도 큰 변화를 맞는다. 충렬왕 34년(1308) 사관을 문한서(文翰署)에 병합해 예문춘추관(藝文春秋館)으로 했다가 충숙왕 12년(1325) 예문관(藝文館)과 춘추관(春秋館)으로 분리한다. 공민왕 5년(1356)에는 다시 사관으로 고쳤다가 1362년 춘추관으로 되돌린다. 그 뒤 공양왕 1년(1389) 예문관과 춘추관을 합쳐 예문춘추관으로 운영한다.

---

14) 박홍갑, 위의 책, 50~51쪽.
15) 박홍갑, 위의 책, 52쪽.
16) '우리나라 사관제도 변천사'를 기술하기 위해 참고한 문헌은 김경수의 저서 『조선시대의 사관 연구』와 박홍갑의 『사관 위에는 하늘이 있소이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동아세계대백과사전』등으로, 관련 내용을 종합해 요약했다, 참고 문헌마다 기술 내용이 다른 것이 적지 않아 일치한 대목을 중심으로 정리할 수밖에 없었다.

고려의 사관제도는 조선에 계승된다. 조선은 개국 초 고려 말의 예문춘추관제를 그대로 운영하다가 태종 원년(1401) 관제를 정비할 때 예문관과 춘추관으로 분리해 예문관에는 전임사관을, 춘추관에는 겸임사관을 둔다. 사명(詞命)의 제찬(制撰)은 예문관의 전임사관이, 시행사의 기록은 춘추관의 겸임사관이 맡았다.

성종 때『경국대전(經國大典)』의 규정으로 완성을 보게 된 사관제도는 다른 제도가 그러하듯, 조선 후기까지 큰 변화 없이 계속되다가 1894년 갑오경장 관제개혁에 따라 의정부(議政府) 소속의 편사국(編史局)으로 개편되었다.

제2절 사관의 선발

1. 자격 요건

중국 한(漢)나라의 허신(許愼)이 지은『說文解字』는 옥편의 원조로, '史'자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한다. '史'를 '일(事)을 기록하는 사람'이라 해서 '史官'으로 보았다. 자체(字體)는 '손 手'와 '가운데 中'의 합성어로, '손으로 中을 잡고 있는 형태'라고 풀이한다. 여기서 '中'은 '正'을 뜻하므로 '史'에는 '正手' 곧 '바르게 쓰다'는 의미가 들어 있다. 원래 '中'은 중국 고대 제후의 제례에서 궁사(弓射)의 관중 수를 뜻하는 것이었다. 관중(貫中) 수를 세는 자는 활을 쏜 자의 지위나 권력, 친분 등에 구애받지 않고 정확해야 함은 말할 것도 없다. 따라서 '史'는 치우침이 없이 객관성을 갖고 역사를 기록하는 자를 말한다.

사관의 붓은 관중을 세는 것처럼 공정을 기해야 했기 때문에 그 자격 요건 또한 왕비 간택 이상으로 까다로웠다. 중국 송(宋)나라의 증공(曾鞏)은 사관의 자격 요건과 관련해 "그 명철함이 만사의 이치를 반드시 족히 두루 알아야 하고, 도의는 반드시 족히 천하의 용도에 적당해야 하며, 지혜는 족히 알기 어려운 의미를 통해야 하고, 문사(文詞)는 드러나기 어려운 정서를 발해야만 사관으로서의 소임을 칭송받을 수 있다"[17]고 했다. 또 당나라 유지기는 재(才)·학(學)·식(識)의 삼장(三長)을

17) 김경수,『조선시대의 사관 연구』, 국학자료원, 1988년, 18쪽.

자격 요건으로 들고 있다.[18]

조선에서도 사관으로 선발되려면 제일 먼저 이 삼장 관문을 통과해야 했다.[19] '재'는 역사를 서술하는 문장력, '학'은 해박한 역사 지식, '식'은 역사를 꿰뚫어보는 통찰력(史觀)을 말한다.[20]

둘째, 본가, 처가, 외가의 가계에 아무런 흠이 없어야 한다.[21] 예를 들어, 조상 중에 장리죄(贓吏罪)를 범했거나 서얼 출신으로 세계(世系)에 문제가 있을 경우 사관이 될 수 없었다.

셋째, 반드시 문과 급제자에 한했으며, 무과는 물론 음서(蔭敍) 출신자[22]도 제외되었다.

넷째, 인간관계가 원만한지도 신중하게 살폈다. 사람이 간사하고 유생시절 동료들과 사이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검열(檢閱, 전임사관)에 제수된 정언각(鄭彦慤)의 교체를 요구한 것[23]은 이와 무관하지 않다.

다섯째, 평소의 마음가짐과 정직성도 선발의 잣대였다. 사특(邪慝)하므로 사관에 적당하지 않다[24]는 기사(記事)와, 사필(史筆)은 아무나 잡는 것이 아니고 정직한 사람이 잡아야 한다[25]는 기사 등이 이를 입증한다. 위의 '기사' 내용은 『조선왕조실록』에서 따온 것으로, 당시에도 실록에 실려 있는 기록 내용을 '기사'라 했다.

조선이 사관의 자격으로 삼장과 문과의 급제 등 학문적인 것 외에 성격이나 행실까지 들고 나왔던 것은 그들이 일반 관리와는 달리 기록을 통해 문화를 전수하고 그로써 후세의 평가를 받는다는 '감고계금(鑑古戒今)'의 역사관에 따라 임무를 수행했기 때문이다.

조선이 제시한 이런 자격 요건은 곡필을 배척하고 권력의 논리에 맞서며 곡학아세하지 않는 사관정신에 대한 최소한의 사전 검증장치라 할 수 있겠다. 오늘날 언론사에서 수습기자들에게 수습교육을 할 때 "기자가 되기 전에 먼저 사람이 되어라"고 강조하는 것과 통하는 장치라 할 수 있다.

---

18) 박홍섭, 위의 책, 57쪽.
19) 『태조실록』 권7, 4년 1월 25일.
20) 김경수, 『조선시대의 사관 연구』, 국학자료원, 1998년. 30쪽.
21) 『성종실록』 권64, 7년 2월 2일.
22) 『중종실록』 권66, 24년 12월 5일.
23) 『중종실록』 권75, 28년 7월 5일.
24) 『중종실록』 권9, 4년 10월 19.
25) 『중종실록』 권35, 14년 4월 22일.

2. 선발 절차

사관 선발 절차도 매우 엄중해 3단계를 거쳐야 했다. 조선 후기 실학자 이긍익(李肯翊)이 엮은 사서 『연려실기술(練藜室記述)』에 그 3단계가 나와 있다.[26]

1단계는 예문관 소속 전임사관의 추천이다. 예문관의 전임사관 가운데 전번 추천에서 맨 끝번으로 추천된 자를 하번(下番)이라 하는데, 이 하번이 비밀추천회의를 주관한다. 하번은 상번(上番)과 함께 의논해 새로 추천할 자의 차례를 정한다.

무오사화의 희생자인 김일손이 하번으로 있을 때 적임자를 찾지 못해 정여창(鄭汝昌)이 나타날 때까지 5년간 자리를 비워두었다[27]는 사실은 적임자를 찾아내기가 그만큼 어려웠음을 보여주는 예다.

2단계는 추천된 자에 대한 심사다. 일찍이 예문관의 전임사관을 역임한 자와 홍문관(弘文館)·예문관 당상관들이 모여 추천된 자를 심사하는 과정이다. 이의가 없을 경우 향을 피우고 천지신명에게 고하는 축문을 읽는다. "사필을 잡은 임무는 나라에서 가장 높고 무거운 것이니 추천된 자가 적임이 아니면 반드시 앙화(殃禍)가 있을 것이라." 적임자가 아닐 경우 어떤 벌도 달게 받겠다는 축문의 다짐에서도 사관의 근중(斤重)이 얼마쯤인지 짐작이 간다.

3단계는 실력 테스트다. 삼정승(三政丞)과 찬성, 참찬, 예문관·춘추관의 당상관, 이조 당상관이 강목(綱目), 좌전(左傳), 송감(宋鑑) 가운데 하나로 테스트해 성적을 매기면 선발 절차는 끝난다.

이런 까다로운 절차를 통과하지 않으면 사관 자리에 진출할 수 없다는 엄정함 또한 사관정신을 올곧게 뿌리내리도록 하는 데 큰 몫을 했을 것이다.

제3절 사관의 직제와 특권

조선왕조는 예문관에 한림(翰林)이라 불리는 전임사관 8명을 두었는데, 이 전임사관으로 하여금 춘추관의 기사관(記事官)까지 겸하도록 했다. 춘추관 소속인 겸임사관은 평상시에는 자신이 원래 소속된 관청에서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시행

26) 『練藜室記述』 별집 권7, 官職典故 藝文館條. 『국역 연려실기술』 제10책, 관직, 민족문화추진회, 1966년. 김경수, 『조선시대의 사관 연구』, 국학자료원, 1998년, 35쪽 재인용.
27) 『翰苑題名錄』, 新薦式, 후편. 김경수, 『조선시대의 사관 연구』, 국학자료원, 1998년, 35쪽 재인용.

사라는 공적 일기를 작성했으며, 국왕이 죽은 뒤엔 실록 편찬에도 참여했다. 조선 왕조가 이들 사관에게 특권을 부여한 것은 직필을 보장하기 위해서였다.

1. 예문관의 전임사관

조선 성종 때 완성을 본『경국대전(經國大典)』은 국가체제 운영에 필요한 모든 법을 망라하고 있다. 예문관·춘추관의 직제와 전임사관·겸임사관의 임무 등도 당연히『경국대전』의 규정[28]에 따라야 했다.

이『경국대전』에 의하면, 예문관 관원은 겸임과 전임을 합쳐 13명이었다. 영사(領事, 정1품)에서 응교(應敎, 정4품)까지의 고위직은 5명이 각각 겸임했다. 수장인 영사는 영의정(領議政)이, 직제학(直提學)은 도승지(都承旨)가, 응교는 홍문관(弘文館)의 교리(校理) 이상 관직을 가진 자가 겸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참외관(參外官)인 하위직은 봉교(奉敎, 정7품 2명)·대교(待敎, 정8품 2명)·검열(檢閱, 정9품 4명)로, 모두 8명이 전임했다. 이 8명을 한림이라 통칭했으며, 한림을 일컬어 전임사관이라 한다.

예문관 소속의 전임사관을 협의의 '사관'이라 하는데, 이는 전임사관의 역할이 그만큼 컸기 때문으로 보인다. 전임사관을 포함한 춘추관 소속의 겸임사관은 광의의 사관으로 보면 된다.

<표 1> 예문관 관직

품계	정1품	정2품	종2품	정3품	정4품	정7품	정8품	정9품
관직	영사	대제학	제학	직제학	응교	봉교	대교	검열
정원	1명	1명	1명	1명	1명	2명	2명	4명
비고	겸임	겸임	겸임	겸임	겸임	전임	전임	전임

*출처:『경국대전』

전임사관은 네 가지 임무를 수행했다.

첫째, 전임사관은 실록 편찬의 1차 사료로서 가장 비중이 컸던 사초를 작성했다. 사초란 사관이 국왕의 언행과 통치행위, 조정의 회의와 행사 등에 참석해 보고 들

28)『경국대전』, 吏典 京官職 藝文館. 박홍섭, 위의 책, 43~48쪽.

은 내용, 시정득실(時政得失), 나라의 치란성쇠(治亂盛衰), 관리들의 현부(賢否)·비행, 각종 사건·사고 등을 기록한 것으로, 역사적 사실과 함께 논평도 담고 있다.

사초의 취재 및 기록이 예문관의 전임사관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함은 전임사관이 기사 활동의 중심에 서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임사관이 조선 사관의 꽃에 비유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고려시대에는 수찬관(修撰官)급 겸임사관을 중심으로 사관제도를 운용해왔으나, 조선시대 들어서 참외관인 전임사관한테 사초를 작성하도록 한 것은 관계(官界)에 인연이 적은, 문과에 급제한 젊은 엘리트를 사관으로 발탁해 역사 기록의 생명인 '직필'을 고수하기 위한 방책으로 여겨진다. 이런 이유에서 전임사관이 작성하는 사초의 위상은 겸임사관이 기록하는 시행사보다 높았던 것이다. 물론 시행사도 사초로 인정되었다. 이들의 위상 차이는 사관의 직능이라는 점에서 볼 때, 고려시대와는 달리 조선시대 전임사관인 참외관의 위상이 참상관(參上官) 이상의 겸임사관보다 높았음을 보여주고 있다.[29]

전임사관 및 사초의 위상이 이러했던 만큼, 사초에는 역사를 바르게 기록하려는 정신, 곧 사관정신이 다른 무엇보다도 짙게 녹아들어 있다 할 것이다.

『중종실록』 권3 2년(1507) 6월 10일자 기사는 전임사관의 위치와 사초의 엄계(嚴戒)를 잘 설명하고 있다. 이 기사는 봉교 김흠조(金欽祖) 등 당시 전임사관들이 상소한 것을 작성한 것이다.

> 예로부터 지금까지 위아래로 수천백 대에 각각 사관을 두어 당시의 일을 기록하되, 아름다운 점을 가리지도 않고 나쁜 점을 숨기지도 않아 사실에 따라 바르게 써서 진퇴시키고 여탈(予奪)함이 하나같이 공정했던 것은 방책(方策) 등에 늠름하게 실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글자의 포폄(褒貶)이 부월(斧鉞)보다도 엄하고 만세의 경계됨이 별이나 햇빛보다도 밝았으니, 사관의 직책이 너무도 중하지 않습니까? 비록 왕공의 위엄으로서 미미한 신하에 의해 논평을 당하게 된다 하더라도 이를 꾸미거나 지워버릴 수 없는 것은 실로 천하 만세의 공론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만약 공론을 두려워하지 않고 뜻대로 꾸미거나 지워버린다면 군신 상하가 서로 두려워하고 꺼리지 않아 오랑캐로 전락하게 되어 국왕의 법이 무너지고 사람의 윤기가 끊어질 것이니, 누가 다시 붓을 들고 사실대로 써서 뒷세상에 권면(勸勉)과 징계를 보여주겠습니까?

29) 오항녕, 위의 책, 401~402쪽.

둘째, 전임사관은 시정기의 편찬 주체였다. 사초와 함께 실록을 편찬하는 기본 자료인 시정기는 춘추관의 겸임사관이 자신의 1차 소속인 각 관청에서 시행사를 일기 형식으로 작성해 춘추관에 올린 것을 전임사관이 정리·등록한 공적 문서를 말하는데, 수집·정리·관리만 잘하면 되었지 굳이 편찬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시정기는 낮은 수준의 편찬이었다[30]고 해야 할 것 같다.

셋째, 전임사관은 춘추관의 기사관(記事官, 정6품~종9품)을 겸했다.

넷째, 전임사관은 실록 편찬에도 참여했다. 『세종실록』 편찬을 기점으로 전임사관이 실록 편찬에 나서게 된 것이다. 그 이전에는 춘추관 겸임조직을 중심으로 실록 편찬 작업이 이뤄졌었다.

전임사관이 생산하는 사초는 입시사초(入侍史草)와 가장사초(家藏史草)로 구분된다. 입시사초란 전임사관 가운데 검열이 매일 정사가 이루어지는 장소에 입시해 기록한 사초를 말한다. 상번(上番) 검열이 국왕 등의 언어행동을 초서로 기록해 하번(下番) 검열에게 넘기면 하번은 이를 정서(淨書)·정리해 다시 상번에게 주었고, 상번이 곧장 춘추관에 납입했던 것이 입시사초였다.

가장사초는 입시사초와는 별도로 입참 후 집에 돌아와 기억을 더듬어가며 다시 작성한 것으로, 가장(家藏)해두었다가 실록을 편찬할 무렵 실록청에 제출하는 사초를 말한다. 가장사초에는 입시 때의 정사와 함께 조정이나 민간에서 견문한 정책과 인물 등에 대한 세평(世評) 등을 종합해 자신의 의견까지도 적을 수 있었다. '자신의 의견'이란 실록에서 '사신(史臣) 왈(曰)…'로 시작되는 '사론(史論)'을 일컫는다.

가장사초는 일단 기록한 시점 이후에도 언제든지 추가 기록이 가능해 국왕과 관료들이 기록 내용에 대해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가장사초의 내용이 누설되거나 공개되었을 경우 거의 예외 없이 조정에 피바람이 몰아쳐 사관들이 다치곤 했는데, 그런 점에서 가장사초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도 같았다. 지금의 신문기사로 치면, 가장사초 중에는 일종의 사설이나 칼럼 같은 의견기사가 많았다.

전임사관은 국왕과 함께 있기 위해 무진 애를 썼다. 그들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국왕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다. 조참(朝參)·상참(常參)·조계(朝啓)·윤대(輪對)·경연(經筵) 등 정치와 경연이 이루어지는 곳은 말할 것도 없고, 사냥 등 국왕의 행행(行幸)까지도 쫓아다니며 일거일동을 빠짐없이 기록했던 것이다.

---

30) 오항녕, 위의 책, 356쪽.

자연히 전임사관과 국왕 사이에 긴장관계가 형성될 수밖에 없었다. 사관은 고급 정보와 함께 더 많은 양의 정보를 입수하기 위해 늘 국왕 곁에 가까이 머물러 있으려 했고, 국왕은 자신의 흉허물이 역사에 남을까봐 사관을 가급적 멀리하려 했던 것이다. 사관과 국왕의 이런 불편한 관계가 조선시대 내내 이어졌다 함은 사관의 입시 자체가 권력에 대한 커다란 견제 기능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조선 사관의 사관정신을 자라게 하는 요인은 바로 이 긴장관계의 지속에서 찾아져야 한다고 본다.

'하루의 역사가 신문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면, 전임사관이 매일 기록한 사초의 경우 대부분 실록에 수록되었으므로 '조선의 역사는 사초에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2. 춘추관의 겸임사관

『경국대전』을 근거로 춘추관의 직제를 살펴보면, 다른 관청의 관원이 춘추관의 직제를 모두 겸임한 것이 춘추관의 제1 특징이다. 정1품 영사(領事)는 영의정이 겸하고, 감사(監事)는 좌·우의정이 겸하면서 영사를 보좌했다. 지사(知事)는 육조판서(六曹判書) 중 2명이, 동지사(同知事)는 육조참판(六曹參判) 중 2명이, 수찬관(修撰官)은 육승지(六承旨)와 부제학(副提學)이, 기주관(記注官)은 의정부(議政府)·홍문관(弘文館)·사헌부(司憲府) 등 소속의 정5품에서 종5품이, 기사관(記事官)은 홍문관·시강원(侍講院)·사간원(司諫院)·승정원(承政院) 등 소속 정6품에서 종9품이 각각 겸했다. 기사관의 경우 춘추관 15명 외에 예문관 전임사관 8명도 겸했으므로 모두 23명에 이른다. 따라서 조선의 사관은 전임사관 8명에다 겸임사관 52명을 합치면 60명이 되는 것이다. 춘추관 관원 전체를 겸임사관이라 부르는데, 동지사 등 2품 이상 겸임사관은 실록 편찬 책임관이며, 수찬관 이하의 겸임사관은 기사를 담당했다.

겸임사관의 주요 임무는 시행사를 기록하는 것이었다. 시행사는 수찬관 이하 편수관·기주관·기사관이 작성했으며, 춘추관의 겸임사관은 자신이 본래 소속된 관청에서 각각 업무를 수행하면서 매일 소속 관청의 시행사를 기록했다. 기사 내용은 정치의 득실과 민생의 동향을 살피는 근거가 되었으며, 전임사관이 빠뜨리고 기록하지 않은 사실도 보충했다.

<표 2> 춘추관 관직

관 직	품 계	인 원	겸 춘 추
영사	정1품	1명	영의정
감사	정1품	2명	좌의정, 우의정
지사	정2품	2명	6조판서 중 2명
동지사	종2품	2명	6조참판 중 2명
수찬관	정3품	7명	6승지, 부제학
편수관	정3~종4품	10명	의정부(사인 2명), 홍문관(직제학 1명, 전한 1명, 응교1명, 부응교 1명), 사헌부(집의 1명, 장령 2명), 사간원(사간 1명)
기주관	정5~종5품	13명	의정부(검상 1명), 홍문관(교리 2명, 부교리 2명), 사헌부(지평 2명), 6조좌랑 6명
기사관	정6~종9품	15명	홍문관(수찬 2명, 부수찬 2명, 박사 1명, 저작 1명, 정자 2명), 시강원(사서 1명, 설서 1명), 사간원(정언 1명), 승정원(주서 2명), 종부시(주부 1명), 승문원(박사 1명)

*출처: 『경국대전』

겸임사관은 국왕이 죽고 나면 실록청을 설치해 실록 편찬을 주관하는 일도 맡았다. 영사에서 종2품 동지사 이상은 실록청을 구성하고 업무를 감독하는 감독관 역할을 했다. 수찬관은 글자 그대로 실록 편찬 총괄 책임자였으며, 편수관 이하가 실록 편찬 실무를 담당했다.

겸임사관제에서 주목할 것은 승정원의 도승지가 예문관의 직제학을, 육승지가 춘추관 수찬관을, 주서(注書, 정7품) 2명이 기사관을 겸했다는 사실이다. 입시 논쟁을 벌일 때마다 국왕 등은 "승지가 사관을 겸하고 있으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며 전임사관의 입참을 물리치곤 했었다. 실제로 주서의 경우 실록 편찬의 중요 자료 중 하나인『승정원일기』를 쓰는 일이 주 임무여서 그들을 방패막이로 내세웠겠지만, 그때마다 전임사관은 도시(都是) 그들을 못 믿겠다는 투로 항변했던 것이다.

겸임사관을 둘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두 가지로 생각해볼 수 있다.[31]

31) 오항녕, 위의 책, 112쪽.

첫째, 국사란 국정 전반과 시대의 풍속에 대한 기록을 담아야 하기 때문에 다양한 관청과 관직에 있는 사람들의 협력이 필요했다. 왜냐하면, 국정기록은 여러 관청에서 생산되게 마련이고, 그 관청에서 생산되는 기록은 그 관청의 담당 관원들이 우선 작성·관리하는 것이 상례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 관청에 겸임의 형식으로 사관을 두는 편이 원활한 기록의 수집에 도움이 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둘째, 겸임사관을 둔 이유는 사관의 직능이 기록과 편찬으로 이원화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대체로 기록은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데 비해, 편찬은 일시적이고 간헐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기록과 편찬이라는 두 업무를 수행할 때 상시적인 전임관원과 함께 겸임을 두어 운영하는 편이 훨씬 효율적이었을 것이다. 『고려사』와 같은 정사(正史)나 『동국통감』 같은 통사(通史)는 물론이고 당대사인 실록의 경우도 이런 측면이 있다.

3. 사관의 특권

조선왕조 때 관료들이 가장 선망했던 관직은 청요직(淸要職, 고결하고 중요한 관직)이었다. 고위 관료가 아닌 당하관 이하 관리인 이 청요직은 '공론은 아래에 있다'는 원칙을 지키는 신진 관리를 이끌어 정책 결정권을 가진 고위 관료(당상관)를 견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예문관의 전임사관도 청요직으로 우대받았다. 청요직은 시대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전임사관 외에도 대체로 사헌부 장령(1명), 홍문관 당하관(12명), 이조(吏曹) 전랑(6명)이 포함되었다.

예문관 전임사관 가운데 최하위직인 검열(정9품)로 일단 발탁되면 근무 일수와 관계없이 정8품인 대교, 정7품인 봉교로 승진할 수 있는 특혜가 주어졌다. 또 6품으로 승급될 경우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의 문학(정5품), 사서(정6품)에 오르고, 양사(사헌부·사간원)에도 통망되었다.

사관은 사초를 작성하기 위해 국왕에게 올라오는 소차(疏箚)와 장계(狀啓)도 먼저 볼 수 있었으며, 국왕의 비답(批答)이 내려진 나라의 모든 문서도 열람할 수 있었다.

사관에게는 중죄가 아닌 경우 직접 추국 당하지 않는 특권이 부여되기도 했다.

본래 7품 이하 관리의 범법행위는 사헌부에서 직접 그 죄를 문초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전임사관 등에게는 글로 사실 여부를 묻는 특혜를 줌으로써 중죄가 아닐 경우 어느 정도 면책 특권을 주었던 것이다.[32]

'대저 조정 관원이 죄가 있으면 금부(禁府)에 가두니 이것은 사대부를 존대하는 좋은 법입니다. 무릇 참외관(參外官)은 모두 잡아다가 추고하나, 한림(전임사관)·홍문관원 같은 경우에는 으레 함문(緘問)하게 하니 그것은 경연관(經筵官)과 사관을 중시하기 위해서입니다'[33]라는 중종 5년 김수동(金壽童)의 계(啓, 윗사람에게 올리는 글)는 경연관과 사관, 학술기관에 종사하는 관원에 대한 조정의 배려가 있었음을 확인하게 해준다. 이 계청(啓請)은 동부승지 김세필(金世弼)이 사헌부에서 추문받게 되었을 때 나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전임사관의 위치가 이러했던 만큼 대신들마저 사관 벼슬을 시기하기도 했다.[34] 실제 그런 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었는데, 사관이란 벼슬이 얼마나 명예로운 자리인가를 헤아리게 해준다.

---

32) 김경수, 『조선시대의 사관 연구』, 국학자료원, 1998년, 38쪽.

33) 『중종실록』 권10, 5년 2월 丙午.

34) 세종 3년 늦가을 어느 날, 중국 사신을 접대하는 태평관에서 군주와 신하가 참여한 가운데 연회가 열렸다. 이때 이승문이란 사관이 태평관의 계단 밑에 서 있었는데, 사금(司金) 김심이란 자가 술에 취해 막대기를 휘두르며 이승문을 몰아내려 했다. "나는 사관이다. 네가 어찌 나를 몰아내느냐?" "사관이 도대체 무엇 하는 놈이냐?" 이 일로 춘추관 감사 이원 등이 사헌부에 공문을 보내 김심의 죄를 다스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땅히 김심의 죄를 묻도록 하는 데 앞장서야 할 춘추관 영사 박은(朴訔)은 병을 핑계로 집안에 틀어박혀 있으면서 차일피일 미루었다. 그는 사관을 해보지 못한 한(恨)을 갖고 있었기에 시기심이 발동해 일부러 뒷짐졌던 것이다. 결국 사관 이승문이 직접 사헌부에 고발해야 했고, 김심은 파면되었다. 박홍갑의 저서 『사관 위에는 하늘이 있소이다』의 55~56쪽을 요약했다.

제3장 사관정신의 형성 배경

유교문화(儒敎文化)와 조선 왕조의 성리학적 통치이념, 춘추필법(春秋筆法) 등을 사관정신의 형성 동인(動因)으로 들 수 있는데, 이 장에서는 그것들을 간략하게 추적한다.

제1절 성리학적 역사인식

조선시대를 이해하는 키워드는 유교문화다. 조선왕조의 사상적 기반이었던 유교와 성리학(性理學)에 대한 기초적 이해 없이는 조선의 실체에 다가서지 못한다. 유교와 성리학이 조선시대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종 제도와 국가·관료·지배층의 행동기준이자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잣대이기 때문이다. 조선 사회의 구심점을 이루었던 지성이자 인격이었던 선비는 물론이려니와, '선비 중 선비'로 통했던 사관 또한 유교문화의 틀 속에서 분석하지 않으면 그 진정한 이해에 도달할 수 없다.

유교는 신(神)을 기반으로 하는 사상이 아니다. 유교는 인간을 위한 인간에 의한 인간의 종교다. 유교는 인간의 일상생활에 기반을 두고 일어난 종교이자 철학이며 사상이다. 인간을 말하고 인간을 생각하고 인간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 유교사상이어서 그렇다. 유교를 흔히 '나를 닦는 것(修己)'과 '남을 다스리는 것(治人, 安人)'의 종교라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35]

조선은 유교 가운데 성리학을 통치체계의 원리로 받아들였다. 성리학은 단순히 이론유학(理論儒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유학사상을 올바르게 실천하는 학문이다. 인간의 순수한 본성을 긍정하고 이를 실천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보았으며, 이는 정의를 귀하게 여기는 도덕적 기초가 되었다. 인간과 존재의 본질을 탐구하는 본체론적인 측면과 역사적·사회적 상황에 있어서의 행위의 준칙 및 규범을 제시하는 현실적 측면을 동시에 구비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

35) 김세철·김영재, 『조선시대의 언론문화』, 커뮤니케이션북스, 2000년, 23쪽.

조선의 성리학적 통치이념은 덕(德)과 예(禮)로 정치를 해야 한다는 덕치주의(德治主義)와 민의를 하늘의 뜻으로 알고 백성을 주인으로 섬기는 민본주의(民本主義)로 요약할 수 있다. 이 통치이념의 구현을 위해 동원된 논리가 왕권과 신권의 조화였다.

조선시대의 선비가 성리학과 성리학적 통치이념을 바탕으로 인격적 완성을 도모했다 함은 그들이 그것들을 사상적·철학적·가치정향적(價値定向的) 신념체계로 받아들였다 함을 의미한다.

성리학과 성리학적 통치이념은 선비의 역사관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들은 역사를 통해 시비선악(是非善惡)을 밝혀 과거의 삶에 대한 윤리적 심판을 내리고 그것을 미래의 삶에 대한 반성의 거울로 활용하고자 했다. 역사는 권력의 부침이나 흥망을 넘어 인간의 삶을 궁극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라고 인식했던 것이다.

역사 기록을 통해 후세의 평가를 기다리고 동시에 현재의 삶 속에서 후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며 산다는 것은 종교적 경건성에 가까운 것이다. 인간은 죽으면 기(氣)가 흩어지는 것뿐이라는 기론적(氣論的)인 성리학적 생사관(生死觀)에서 보면 선비의 역사의식은 종교성을 배제하고 설명하기 어렵다. 이런 점에서 선비의 역사관은 사상사적 전환과 깊은 관련을 갖는다. 불교의 윤회관(輪廻觀)을 사상적으로 극복한 성리학의 성립이 역사관에도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것이다. 선비는 개인의 해탈(解脫)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게 되었고, 내세의 업보보다는 후세의 평가에 더 큰 의미를 두게 되었다.[36]

그 성리학적 역사인식을 주도한 책이 『자치통감(資治痛鑑)』과 『자치통감강목(資治痛鑑綱目)』이었다. 두 사서(史書)의 경우 주석 작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며, 경연 강의교재로도 가장 많이 활용되었다.

선비의 역사의식은 이렇듯 성리학적 이념을 실천하는 것이었고, 그것이 사관이란 특수 임무 수행자에게 넘어오면 더욱 벼리어져 '직필'과 '저항'으로 요약되는 사관 정신을 빚어내게 된다. 군주는 한 시대를 다스리는 것으로 끝나지만, 사관은 영원토록 후세에 역사를 남기는 존재라는 당찬 선언은 바로 그런 '벼리어진 정신'의 하나라 하겠다.

36) 오항녕, 위의 책, 404쪽.

제2절 춘추필법으로서의 역사 기록

'역사(歷史)'를 흔히 '춘추(春秋)'라 하는데, '춘추'는 '기록'의 의미도 담고 있다. '춘추필법(春秋筆法)'은 중국 노(魯)나라의 사관이 기록한 일기체의 궁정 연대기인 '춘추'라는 제목의 역사책을 유교의 개조(開祖) 공자(孔子)가 대의명분에 근거해 다시 저술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엄정한 역사적 평가를 내리는 논법'이란 뜻을 담고 있다. 공자는 아무리 큰 사건이라도 대의명분에 어긋난 일이면 간단히 사실만 기록하고 말았다. 반대로 대의명분이 분명한 일이라면 비록 작은 일이라도 높이는 표현과 함께 자세히 기록했다.

'언론정신' 등을 의미하기도 하는 춘추필법은 조선 선비의 역사관과 현실 해석에 막중한 영향을 미쳤고, 역사를 기록하는 사관뿐 아니라 언관의 좌표가 되었다.

춘추필법의 이런 내력 때문에 오늘날의 기자들은 스스로를 '춘추자(春秋者)'로 부르며[37] 기자정신을 되새기곤 한다. 청와대 기자실 건물에 '춘추관(春秋館)'이란 현판을 내건 것도 춘추필법의 내력에 따른 것이다.

춘추필법은 '사실을 있는 그대로 곧게 쓰는 것'을 뜻하는 '직필(直筆)'의 대명사이기도 하다. 직필과 반대되는 말은 '구부려 쓴다'는 의미의 곡필(曲筆)로, 권력에 아첨해 사실을 왜곡하고 비위에 맞추어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성리학적 역사인식으로 무장한 조선 사관은 단순하게 있는 사실을 정리한 것이 아니라, 성리학적 명분과 가치기준에 따라 직필했다. 역사의 정의를 상징하는 춘추대의(春秋大義)와 역사의 엄정성을 상징하는 춘추필법에 입각해 이실직서(以實直書, 사실을 바른대로 기술함)했던 것이다.[38]

『조선왕조실록』을 여행하다 보면 공정한 역사 기록을 방해하는 것은 언제나 권력이었으며, 권력에 굴하지 않고 공정하게 역사를 기록하려는 사관의 춘추필법이 번득이고 있음이 발견된다. 실록은 전왕(前王)의 국정 운영과 관련된 일체의 사실을 기록한 당대사(當代史)였으므로 사관이 화를 입을 공산이 적지 않았다. 후계한 국왕 때 실록이 편찬되지만, 후계한 국왕과 전왕과의 관계가 일가문중(一家門中)이란 엄연한 현실, 그리고 전왕 때 활동한 관료 중에 생존해 있는 사람도 많고 여전히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사람도 있어,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얽힐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관의 붓은 예의 주시 대상이었다. 사관의 춘추필법을 방해하는 사례가 빈번

37) 박홍식, 『현대인의 유교 읽기』, 아세아문화사, 1999년, 82쪽.
38) 김세철·김영재, 위의 책, 117쪽.

히 나타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처럼 사관은 늘 필화에 노출되어 있었으나 춘추필법을 고수했다.

중국에서 공자에 이어 춘추필법의 모범을 보인 역사가는 사마천이다. 그는 흉노 토벌에 나섰다가 포로가 된 이릉(李陵) 장군을 옹호하다가 한(漢)나라 무제(武帝)의 노여움을 사서 궁형(宮刑)을 당했다. 사대부로서 자결을 택하지 않고 살아남은 이유에 대해 그는 「태사공자서(太史公自序)」에서 그의 아버지 사마담의 당부 때문이라고 적고 있다. 태사공이면서도 황제의 봉선(封禪, 태산에서 하늘에 제사 지내는 것) 의식에 참여하지 못한 것을 한으로 여긴 사마담은 사마천에게 "내가 저술하려던 바를 잊지 말라"고 당부했는데, 그 당부가 바로『사기』저술이었다.

사마천은『사기』에서 흉노와 고조선 정벌 때문에 중국인들이 떠받드는 무제를 미신이나 좇는 용렬한 군주로 묘사했다. 또 그가 한나라의 벼슬아치이면서도 한의 창업주인 고조(高祖) 유방(劉邦) 본기보다 그와 맞섰던 항우(項羽) 본기를 먼저 기술했다. 무제나 한나라에 대한 사감이 아니라 권력에 맞서는 직필정신이었다.[39]

조선 사관의 기개 또한 사마천처럼 강인했다. 정조는『현륭원지(顯隆園誌)』에서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히던 날 한림(전임사관) 임덕제가 세자 뒤에 엎드려 일어나지 않자 영조가 끌어내라고 명했고, 위사(衛士)들이 달려들자 "내 손은 사필을 잡는 손이다. 이 손을 끊을지언정 끌어낼 수는 없다"며 항의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조광조(趙光祖) 등이 화를 당하는 기묘사화 때도 사관 채세영(蔡世英)은 자신의 붓을 빼앗으려는 성운(成雲)에게 "이 사필은 타인이 쥘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항변했는데, 다시 뺏으니, 좌우가 숙연해졌다며 권별(權鼈)의『해동잡록』은 전한다.[40] 심지어는 국왕이 "제발 기록하지 말라"고 요구한 사실까지도 사초에 올린 사관도 있었다.

조선 사관의 춘추필법을 지금의 시점에서 새삼 강조하는 것은 "춘추자는 있으되 춘추필법은 없다"는 학계나 언론 소비자들의 지적 앞에 자유로울 이 별로 없는 언론 현실인 까닭이다.

39) 이덕일, 「이덕일 사랑(舍廊)」, 『조선일보』, 2007년 6월 17일자.
40) 이덕일, 위의 글, 2007년 6월 17일자.

제4장 사관의 저항 유형에 따른 사관정신 분석

제1절 입시범위 확대 요구 및 실현

사관제도는 언관제도와 마찬가지로 왕권을 견제하는 수단으로 도입되었다. 덕치(德治)와 민본(民本) 위주의 선정을 펴야 한다는 성리학적 통치이념을 구현하기 위해서였다. 왕권과 신권의 평화로운 조화도 겨냥했음은 물론이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오로지 역사뿐이다”고 스스로 고백한 연산군의 말에서도 확인되듯, 사관의 역사 기록행위는 현실적으로 국왕을 압박하기에 충분했다. 사초가 실록에 실려 후세에 전해지게 된다는 역사에 대한 두려움이 우선 국왕의 언동에 제약을 가했던 것이다. 사관의 입시 또한 그 자체로 왕권에 대한 견제 역할을 했다. 그것도 왕사관(王史官)이란 애칭을 들을만한 전임사관의 경우 국왕이 있는 곳이라면 뒷간에라도 입시해 사초를 작성하려 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상당히 위축되었을 것으로 대중잡을 수 있다.

조선시대에는 신하가 국왕에게 정사를 보고하고 논의하는 장치가 많았다. 먼저 조회(朝會)는 조참(朝參)과 상참(常參)으로 나누어진다. 조참은 중앙에 있는 모든 문무백관이 정전(正殿) 앞에 모여 국왕에게 조현(朝見)하는 정식 조회로, 매월 4회(5일·11일·21일·25일) 열렸다. 매일 짧게 하는 약식 조회인 상참은 의정부(議政府)·종친부(宗親府)·충훈부(忠勳府)·중추부(中樞府)·의빈부(儀賓府)·돈녕부(敦寧府)·육조(六曹)·한성부(漢城府) 등 당상관 전원과 언관 각 1명, 경연 참상관(參上官)과 당하관 각 2명 등이 참석했다. 조회가 끝나면 업무 보고를 하는데, 이를 조계(朝啓)라 한다. 조계 후에는 국왕이 관청별·관원별 윤번에 따라 매일 관리 2~5명을 만나 직무 등에 관해 이야기하는 윤대가 이어졌다. 경연(經筵)도 하루에 세 차례나 열렸다. 이런 공식적인 장치 외에도 사관의 입시 문제를 놓고 첨예하게 부딪쳤던 독대, 국왕이 불러들이는 인견 같은 비공식적인 만남도 있었다.

공식적인 정사 및 행사이든 비공식인 정사 및 행사이든, 사관이 공식적으로 입시할 수 있는 ‘출입증’은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었다. 국왕을 비롯한 권신의 압력과 수모에 굴하지 않고 집요하게 도전해 쟁취해낸 것이다. 국왕은 사관한테 말 한 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감시당하고 기록당하길 거부하는 입장이었

고, 사관은 국왕의 통치행위 전반에 대해 감시체계를 구축하려는 입장이어서 기본적으로 왕과 사관 사이에 대결구도가 형성되어 있었다. 그 대결에서 사관은 지원세력인 언관 등과 합세해 왕을 꺾고 출입증을 따냈던 것이다. 이는 성리학적 통치이념이 점차 확립되어가는 분위기에서 가능했던 것임도 간과할 수 없다.[41]

이 절에서는 취재 영역인 입시범위를 둘러싸고 사관-국왕 간에 벌인 논쟁을 군주별로 정리하되, 정전 및 편전 등 입참 다툼·국청 및 정청 입시 요청·비공식 정사 및 행사 참여 요구 등으로 나누어 역사 기록의 영역을 확대해나가는 과정에서 발휘된 사관정신을 분석한다.

1. 정전 및 편전 등 입참 논쟁

1392년 7월 16일 즉위한 태조 이성계(李成桂)는 그해 9월 정전에 사관을 입시하게 하자는 예문춘추관의 상소를 받아들였다.[42]) 여기서 한 가지 밝혀둘 것은 대부분의 정사가 정전과 함께 편전에서도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사관을 기피한 흔적이 발견되고 있는 정종은 즉위 당시 경연 입시를 허락하지 않고 있다가, 언관들이 부왕(父王)의 선례를 확고히 하기 위해 입시를 청하자 그때서야 마지못해 응하는 행태를 보였다.

『정종실록』 권1 원년(1399) 1월 7일 기사는 사관의 경연 입시가 이루어지던 날의 경연청(慶筵廳)을 스케치한 것으로, "군주가 두려워할 것은 하늘이며 사필(史筆)입니다. 하늘(天)이란 저 창창고고(蒼蒼高高)한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理)일 뿐입니다. 사관은 군주의 선악을 만세에 전하니 두렵지 않습니까"라는 지경연사(知經筵事) 조박(趙璞)의 명언도 담고 있다.

그의 말에 주석을 붙이자면, 군주가 존립할 수 있는 요건으로 天과 사필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을 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때의 天은 저 푸르고 높은 하늘이라는 통상의 자연적 실재를 말하는 것이 아니며 理, 즉 우주의 질서를 의미한다. 天(=理)이 지켜야 할 질서라면, 사필은 그 질서의 준수 여부를 살피는 감시자가 된다 하겠다.[43]

당시 그가 사관 신분이 아닌 상태에서 이 같은 발언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내면

41) 박홍갑, 위의 책, 55쪽.
42) 『태조실록』 권2, 원년 9월 14일.
43) 오항녕, 위의 책, 254쪽.

적으로 사관정신을 함께 호흡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다. 그는 이 발언 후 5년이 지나 예문관 대제학을 맡게 된다.

실록을 보면, 태종의 경우 사관의 입시를 몹시 꺼려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형인 정종에게 선위를 받은 태종은 정종대의 사관 입시를 대체로 인정했으나, 편전만은 허락하지 않고 고수하려 했다. 하지만 몇 차례의 접전 끝에 편전도 결국 사관이 접수하게 된다. 태종은 편전을 '쉬는 곳'이라고 핑계를 대곤했다.

태종이 보평전(報平殿)에서 시사(視事)하고 있을 때 사관 홍여강(洪汝剛)이 계단 아래까지 다가왔는데, 환관이(宦官)이 제지했다. 그때 태종은 "정전은 몰라도 쉬는 곳인 편전은 안 된다"고 못 박으면서 "승지들도 사관을 겸하고 있으니 무방하다"고 했다. 이로 인해 입시는 정전으로 제한되었다.[44]

태종이 '승지의 겸임사관론'을 편 것은 줄기차게 따라붙으며 입시 범위를 확대하려는 전임사관을 떼어버리기 위한 구실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사관은 태종이 편전에서 정사를 돌보는 이상 편전도 분명 정전이라고 여겨 보평전에 달려갔던 것이다. 이후 다른 국왕들도 태종의 핑계를 교본으로 삼아 사관을 자주 내치게 된다.

그 이튿날, 이번에는 전임사관 민인생(閔麟生)이 보평전 진출을 시도한다.『태종실록』권1 원년(1401) 4월 29일 기사인 '민인생-태종의 설전'은 젊은 사관의 저항정신을 현장감 있게 전달해주고 있다.

> 왕이 편전에서 정사를 보고 있었다. 사관 민인생이 들어오려고 하므로 도승지 박석명(朴錫命)이 말리면서 말했다. "어제 홍여강이 계단 아래까지 들어왔었는데, 주상께서 말씀하시기를 '무일전(無逸殿, 정전) 같은 곳이면 사관이 마땅히 좌우에 들어와야 하지마는 편전에는 들어오지 말라'고 하시었다." 그러나 민인생은 직접 들은 전지(傳旨)가 없다는 이유로 뜰로 들어섰다. 왕이 "어찌하여 사관이 여기까지 들어왔는가" 묻자, 민인생이 "전일에 문하부(門下府)에서 사관이 좌우에 입시하기를 청해 윤허하시었습니다. 신(臣)이 그 때문에 들어왔습니다" 하고 말했다. 왕이 "편전에는 들어오지 말라"고 하자, 민인생은 "비록 편전이라 하더라도 대신이 일을 아뢰고 또 경연의 강론을 하는데 신과 같은 사관이 들어오지 못한다면 어떻게 갖추어 기록하겠습니까" 하고 답했다. 왕이 다시 "이곳은 내가 편안히 쉬는 곳이니 들어오지 않는 것이 가하다. 사필은 곧게 써야 한다. 비록 대궐 밖에 있더라도 어찌 내 말을 듣지 못하겠는가" 라고 말하자, 민인생은 "신이 만일 곧게 쓰지 않는다면 위에 하늘(天)이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44)『태종실록』권1, 원년 4월 25일.

민인생이 “사관 위에는 하늘이 있습니다”면서 태종에 맞선 ‘하늘’은 단순한 ‘하늘(天)’이 아니다. ‘백성’이 곧 ‘하늘’인 것이다. 이처럼 ‘하늘’은 신하들에 의해 국왕을 견제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 활용되어왔다. 따라서 ‘하늘’은 곧 민(民)을 보호하는 철학적 장치라 할 수 있는데, 이것으로도 조선의 성리학적 통치이념의 하나인 민본사상이 사관집단에 얼마만큼 깊숙이 파고들고 있는가를 가늠할 수 있게 해준다.

사초이든 신문 기사이든 뭔가를 기록하려면 현장에 가서 보고 듣고 관찰해야 하는 것은 기록자의 의무이자 권리다. 설령, 원천봉쇄 또는 경계가 심해 현장에 접근할 수 없다 할지라도 좌절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사관 민인생의 사관정신이 바로 그러했다.

태종 원년(1401) 7월 민인생이 편전에 앉아 있는 태종을 문밖에서 엿보다가 탄로 나는 바람에 조정을 긴장시킨 사건이 발생했다. 이 일로 그는 신하의 예를 잃었다는 죄목으로 귀양 가는 처지가 되었다. 민인생은 이처럼 입시제도가 정착되지 못한 상황에서 귀양까지 갔지만, 그의 사관정신은 사관제도의 안착을 위한 거룩한 제물이었다.

태종대의 경우 입시 문제를 둘러싸고 공방전이 유별나게 되풀이되었으나, 결국 입시는 점차적으로 정전과 경연에서 편전으로, 상참과 조참에서 조계로 확대된다. 이는 태종대의 사관이 태종과 양사(兩司) 등 청요직을 중심으로 한 관료집단에 의해 그 업무의 독립성과 위상을 인정받으며 자신들의 활동 영역을 확대하면서 사관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45]

세종·문종대에는 태종대 입시 주조(主調)를 유지하게 되는데, 세종은 전보다 나아진 조치도 내놓는다. 전내(殿內) 기둥 밖으로 사관의 자리를 옮기게 한 것이랄지, 세자가 군주 수업을 받는 서연(書筵)에까지 입시를 허락한 것 등이 그런 조치다. 장계(狀啓)나 하교한 명까지 사관의 기록을 거치도록 조처한 것도 세종대였다.

그러나 세종이 병환으로 첨사원(詹事院)을 두고 세자인 문종이 정사에 참여했던 시기를 전후해 사관 입시는 새로운 문제를 드러낸다. 세종이 재상들과 적잖게 밀의(密意)를 즐기면서 사관을 들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세종은 사관이 밀의의 자리에 들어오려고 하면 “자리를 피해달라”고 노골적으로 요구했던 것이다.[46] 세종 28

45) 오항녕, 위의 책, 261쪽.
46) 오항녕, 위의 책, 263쪽.

년(1446) 영의정 황희(黃喜), 우의정 하연(河演) 등을 불러 무엇인가를 밀의하는 자리에 사관 정신석(鄭臣碩)이 나타나 "신(臣)은 직책이 사실(史實) 기록함을 맡았으니 듣지 않을 수 없사온데, 만약 다른 사람에게 준례(準例)하여 신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은 옳지 못한 듯 합니다"라고 항의하며 입참하려 했으나, 세종은 "만약 피해달라고 말한다면 피하는 것도 마땅하다"며 물리쳤다.[47] 세종 30년(1448)에는 안평대군(安平大君)이 밀지를 가지고 몇 번 세종에게 왕래했는데, 승지나 사관은 그 내용을 알지도 못했다.[48] 세종 31년(1449)에도 좌의정 하연, 우의정 황보인(皇甫仁) 등과 만나 밀의하면서 사관을 들이지 않았다. 이 일에 대해『세종실록』은 밀의 사실과 함께 사론까지 달아가며 후세에 고발한다. "근래에 무릇 일을 의논할 때는 남들이 듣지 않게 하려고 해, 반드시 먼저 사관을 물리치는데, 사관이 또한 물러날 뿐이고 감히 말 한 마디도 못하게 되었다"[49]고 자탄하고 있는 것이다.

밀의라는 방식을 택했으므로 그 주제가 막중했을 것으로 짐작되며, 밀의의 결과 또한 당대인에게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사관 입시를 허용했더라면 밀의에서 더 좋은 결론을 끌어낼 수 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사관이 가만히 붓만 들고 있어도 군주와 신하의 입을 조절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 해당 사관의 경우 일단 근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간주해도 될 것 같다. 탐문 등 사후취재를 통해 얼마든지 밀의의 진실에 접근할 수 있는데도 밀의의 장소에서 그냥 물러나는 것으로 그쳐버려서다.

세종 7년(1425) 예문관 대제학 변계량(卞季良) 등의 건의로 시작된 윤대는 상참과 조계에 참여하지 못하는 관청에서 차례로 1명씩 국왕을 면담하는 것으로, 제도적인 하의상달 언로라 할 수 있다. 처음에 문관 4품 이상 무관 2품 이상으로 제한했던 것을 나중에 문관 6품 이상 무관 4품 이상으로 낮추었고, 매일 5명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윤대가 백성의 형편이나 원망(願望)을 듣는 좋은 제도이지만, 문제는 아무도 입참하지 못하도록 한 채 국왕과 신하 단 두 사람만이 얼굴을 맞대는 이른바 '독대' 형식으로 진행되었다는 데 있다. 조선땅에서 '독대'란 말이 생겨난 것도 세종대였다.

세종이 끝내 윤대에 사관 입시를 허락하지 않자 사간원이 간쟁이란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직언을 한다.

---

47)『세종실록』권113, 28년 8월 30일.
48)『세종실록』권121, 30년 7월 25일.
49)『세종실록』권124, 31년 6월 17일.

옛적에 각 나라가 사관을 두어서 군주의 행동을 반드시 적고 그때의 사실을 반드시 기록해 후세에 공도(公道)를 보였습니다. 지금 조선의 윤대하는 법에 각 관청 4품 이상을 매양 정부와 육조, 언관이 조계한 뒤에 독대해 아랫사람들의 실정을 다 아뢰도록 하는데, 이것은 진실로 성대(盛代)의 아름다운 법입니다. 그러나 사관이 참여하지 못하니 그 아름다운 말씀과 착한 행실을 어떻게 해서 후세에 전하겠습니까. 전하께서는 이제부터 윤대할 때에 사관도 참여하도록 하시기를 원합니다.[50]

세종은 사간원의 간청을 거부한다. 실록에는 그 이유가 나와 있지 있으나 세종이 '윤대의 독대'를 고집한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 추측컨대, 사관을 밀쳐버리고 국왕과 신하 단 둘이서만 만난 것은 민심의 향방과 세론(世論) 등 국왕한테 하고 싶은 말을 옆 사람 눈치 볼 것 없이 직설(直說)할 수 있는 환경적 조건을 만들어주기 위해 그랬을 것이다.

윤대는 세조대에 이르면 독대에 제동이 걸린다. 두 사람씩 들어가도록 하고 사관 입시를 허락한 것이다. 그러자 역제동(逆制動)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독대를 허락해주든지 아니면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성종이 즉위하면서 성리학에 바탕을 둔 치국이념을 실현하려는 움직임이 일기 시작했고, 그런 정책 노선이 사림세력과 연결되면서 더욱 활기를 띠게 되었다. 그 시기에 윤대의 사관 입시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진 것은 시대정신의 반영이라 해야 할 것이다. 성종은 원년(1470) 12월 윤대 후, 윤대는 앞으로 독대로 할 것을 명했다가 며칠 뒤 예조(藝曹)에 전교를 내려 사관의 입시를 승낙했다.[51] 이후 사관의 윤대 입시 원칙은 지켜진 것으로 보인다.

사관의 경연입시규식은 문종 즉위년(1450) 8월 마련된 뒤 단종이 즉위하면서 재론되었다. 의정부(議政府)가 올린 경연사목(經筵事目)에 언관과 사관의 경연 입시를 졸곡(卒哭) 후로 정한 것이 발단이었다.[52] 전임사관(봉교) 전효우(全孝宇) 등은 '졸곡 후 제한'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참찬관(參贊官)도 겸임사관이라 하지만 참찬관 중에 겸임사관을 겸하지 않은 사람도 있으니 전임사관의 입시를 막을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따졌다. 이어 전임사관(검열) 윤자영(尹子滎)이 의정부에 이의를 제기하고, 사간원에서도 언관과 사관의 입시를 청했으나 따르지 않았다.[53] 그 후 그해 9월이 되어서야 의정부에서 올린 경연사목에 조강(朝講)·주강(晝講)·석강(夕講)에

50) 『세종실록』 권29, 7년 8월 21일.
51) 『성종실록』 권8, 원년 12월 2일.
52) 『단종실록』 권1, 즉위년 6월 16일.
53) 『단종실록』 권1, 즉위년 6월 20일.

사관이 각각 한 명씩 입시하도록 했다.[54]

세조 때는 사육신을 중심으로 한 상왕복위운동(上王復位運動) 이후에도 사관 입시의 경우 외견상 큰 변화를 읽을 수 없다. 무력으로 조카를 내쫓고 왕위를 차지한 세조는 의외로 사관과 입시에 부드러움을 보인다. "사관도 군주의 잘못을 말할 수 있다"며 격려한 점, "앞으로는 강무(講武)할 때 사관 두 명을 갖추라"고 한 점,[55] 사정전(思政殿)의 봉희(棒戲)를 구경할 때 사관 입시를 허락한[56] 점 등을 그 부드러움의 이유로 들 수 있을 것이다.

세조의 이런 태도는 역사 기록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자신을 기록(역사)으로부터 초월적인 존재로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주려는 것인지 잘 구분이 안 가지만, 후자 쪽으로 기울게 하는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세조 3년(1457) 10월 15일 세조가 사관의 역사 기록에 관여하고 있는 대목이 그것을 뒷받침해준다. 임영대군(臨瀛大君, 세종의 넷째아들로 세조의 동생)과 계양군 이증(세종의 후궁인 신빈 김씨 소생의 아들)의 인물평을 한 뒤 사관에게 기록하도록 했는데,[57] 군주의 인물평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아무런 계기가 없는 상태에서 나왔다면 사초의 가치가 적어진다 함은 자명하며, 또 그런 일을 사관이 기록하든 말든 군주가 상관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사관의 암흑기'로 지칭되는 연산군대에는 사관의 활동이 위축된다. 입시 범위 상당히 제한된 것으로 보인다. 경연·조참·상참·조계 등의 수시 폐지와 사관 학대 등으로 성종대의 입시범위가 그대로 유지되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반정으로 왕위에 오른 중종은 사관의 요구를 받아들여 사관 앞에 정전과 편전을 완전 개방한다. 성종 때 불허했던 고변자(告變者) 인견에도, 간로(奸路)를 막겠다는 이유를 내세워 대신이 진견(進見)할 때도, 성종 때 허락했다가 연산군 때 금지한 야대(夜對)에도 사관을 참석하도록 수락한다.

중종은 그밖에도 연산군 때 금지했던 정청 참여·국왕의 사냥 동행 등 사관의 건의를 수용하고, 재상이 순변사(巡邊使)로 떠날 때 작별 연회장에도 사관을 입참시킨다. 결국 중종대에는 공식 정사와 함께 비공식 행사에 이르기까지 입시 문제가 거의 다 해결된다. 중종 스스로 마련한 조처도 있다. 승정원과 예문관에 붓 40자루와 먹 20개를 주면서 "이것으로 나의 모든 과실을 숨김 없이 쓰라"고 한 것이랄지,

54) 『단종실록』 권3, 즉위년 9월 18일.
55) 『세조실록』 권5, 2년 8월 23일.
56) 『세조실록』 권7, 3년 3월 15일.
57) 『세조실록』 권9, 3년 10월 5일.

세자의 언동을 사책(史冊)에 쓸 수 있도록 서연(書筵) 입시를 권유한 사실, 34년 주서 이사필의 오기가 문제가 되자 "한 사람(사관)은 곁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따로 적게 해 빠뜨리는 말이 없게 하라"고 전교를 내린 것 등이 그것이다.[58]

중종의 이런 조치는 그의 역사인식 및 사관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태도가 맞물려 이루어진 것이라 하겠다. 그의 역사관은 "대저 역사란 사실대로 써서 천추에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군신들은 서로 권면하고 경계 삼아야 하는 것인데도 사화(무오사화)를 겪은 이후로는 모두 사필을 경계할 뿐이다. 사필을 잡은 자들은 왕의 선악과 신하의 득실을 사실대로 써서 숨기고 꺼리는 폐단이 없어야 한다"[59]고 명한 대목에서도 파악할 수 있다.

2. 국청 진출

입시범위 확대 요구 결과 얻어낸 것들 가운데 국청 및 정청 진출은 경이로운 성과라 할 수 있다.

국청은 역적 등 중죄인을 심문하기 위한 임시기구인데, 사관은 국청의 추국(推鞫) 현장에 참여하기 위해 지난한 다툼의 과정을 거쳐야 했다. 고변 등으로 시작되는 국청에 사관의 참여가 주목되는 것은 대체로 국청이 역모 등 체제와 관련된 사안을 다루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국청에 사관이 입시한 것은 예종 즉위년(1468)이 처음이었다. 창덕궁(昌德宮)에서 남이(南怡)의 옥사를 다스릴 때 승지와 함께 입시한 것이다.[60] 그 후 본격적으로 국청 입시가 논의된 것은 성종 20년(1489)에 이르러서였다.[61]

성종 20년 내금위(內禁衛) 유승손(柳承孫)이 "영안도(永安道)에 이시애(李施愛)의 난과 같은 사건이 있을 것 같다"고 고변했다. 성종은 그를 창덕궁 편전인 선정전에서 인견했는데, 도승지만 입시하고 주서와 사관을 못 들어오게 하자 전임사관(봉교) 권경우(權景祐)가 성종에게 그 부당함을 아뢰었다.[62] 성종이 "다음부터 입시하라"고 했으나 그 후에도 여전히 사관은 따돌림을 당했다. 고변과 관련해 양천군(楊川君) 허종(許琮)을 입궐하도록 했을 때도 사관을 물리쳤던 것이다.[63]

---

58) 김경수, 『조선시대의 사관 연구』, 국학자료원, 1998년, 132~134쪽.
59) 『중종실록』 권16, 7년 9월 19일.
60) 『예종실록』 권1, 즉위년 10월 27일.
61) 오항녕, 위의 책, 294쪽.
62) 오항녕, 위의 책, 294쪽.

결국 기사관(記事官) 이주(李胄)와 남궁찬(南宮璨)이 다시 사관의 입시를 청했다. 아마 그때 주서만 입참하고 사관은 들어가지 못했던 것 같다. 성종은 "도승지 한건(韓健)에게 기록하게 했으므로 기록에는 지장이 없다"고 답했다. 하지만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었다. 한건이 춘추관 겸임사관을 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주는 한건이 문신, 즉 문과 급제자가 아니어서 춘추관 겸임사관을 겸하지 못한 점, 사관의 기록이 아닌 것으로 국사(國史)를 만들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성종을 압박했다. 이 일로 성종은 이주 등을 사헌부에서 추국하게 하고 홍문관 교리(校理) 정경조(鄭敬祖)·조지서(趙之瑞)·강경서(姜景敍)에게 사관을 대신하도록 했다.[64]

이후 이 일은 양사와 성종의 논쟁으로 이어졌다. 헌납(獻納) 윤긍(尹兢) 등은 성종의 처사를 비판했고, 영의정 윤필상(尹弼商)이 성종과 사관의 대립을 중재했다.[65] 성종은 이주 등을 벌주려다 직책만 바꾼 것이라며 자신의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러자 정언(正言) 이수공(李守恭)은 한건이 사관을 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기록해 사관에게 보여준다는 것은 직권 밖의 일이라고 반박했으며,[66] 홍문관 부제학(副提學) 이세광(李世匡) 등도 국가기밀과 국왕의 행동은 사관이 기록한 것이 아니면 신뢰를 주지 못한다고 논박했다.[67] 이세광 등이 올린 계(啓)는 옛날 사관은 대대로 그 직을 맡아 대신도 관여하지 못했던 까닭에 신뢰를 얻었던 것이라며 역사적 맥락에서 사관의 직무수행의 독립성을 강조하고 있기도 하다. 결국 성종은 사관 모르게 추국을 하려 했던 것은 아니라며 물러섰고, 이어 이주·남궁찬에 대한 체임(遞任) 명령을 환수했다.[68]

이 국청 입시사건은 사관정신의 빛나는 역전승에 해당하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연산군 4년(1498) 11월 박원성(朴元成)의 고변 때는 주서만 입시하고 사관은 참석하지 못했는데,[69] 그 몇 달 전에 조선 사관의 대표적 필화사건인 무오사화가 있었고, 그 뒤 연산군이 사관의 국청 입시 논의를 탄압하는 등 서슬 퍼런 시대상황에서 목소리를 내기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종 2년(1507)에는 다시 입시가 허용되어 하원수 등의 역모사건에 사관이 참여했다.[70] 이 일로 국청에 참여한 관리들에게 녹공(祿功)을 했는데, 입시한 승

63) 오항녕, 위의 책, 294쪽.
64) 오항녕, 위의 책, 295쪽.
65) 『성종실록』 권233, 20년 10월 18일.
66) 『성종실록』 권233, 20년 10월 5일.
67) 『성종실록』 권233, 20년 10월 23일.
68) 『성종실록』 권233, 20년 10월 26일.
69) 『연산군일기』 권31, 4년 11월 30일.

지와 주서, 전임사관에게도 상을 내리자 양사가 이를 비판했다.[71] 연산군대와 비교하면 사관에 대한 인식 차이가 격세지감을 갖게 해주는 대목이다.

국가기밀로 여겨지던 역모사건을 다루는 국청에까지 사관이 입참하게 된 것은 '행동하는 역사 기록자'란 별칭이 아깝지 않게 참여 논쟁을 주도한 사관정신의 과실임은 물론이다. 오늘의 기자에게 '국청 취재'는 넘볼 수 없는 과제로 남아 있음에 유념할 일이다.

3. 정청 진입

조선의 인사행정이 이루어지는 곳은 정청이었다. 문관 인사는 이조(吏曹)에서, 무관 인사는 병조(兵曹)에서 각각 맡았다.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청에서 3배수로 후보자를 추천해 국왕에게 올리면 국왕이 낙점하도록 되어 있었다.

관례에 따라 정청도 국청처럼 '사관 출입 금지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성종대 이전에는 누구 하나 정청 입시 문제를 입에 올리지 못했다. 희생까지도 감수해야 하는 처녀림을 개척한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성종대에 처음으로 사관을 정청에 입참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 국청 등 다른 입시 발의 때와 시대적 조건이 대체로 일치함을 발견할 수 있다. 사관의 권위가 높아지면서 직무에 대한 자기의식이 고양되고 있었고, 사림세력의 성장을 바탕으로 한 언관권력(言官勸力)이 확장되어가고 있던 시기였다는 점에서 그렇다. 그런 시대적 환경의 저변에는 세조대의 패도적 정치운영과 사상적 혼돈을 추스르고 다시 성리학적 통치이념에 입각해 사회 전반을 정비해가려는 움직임이 깔려 있었다.[72]

맨 처음으로 정청 입시 발의를 한 것은 성종 10년 윤10월의 일이다. 전임사관(검열) 경력을 지닌 전경(典經) 안윤손(安潤孫)이 국왕 앞에 과제를 던진 것이다.

> 전경 안윤손이 말했다. "정사(政事, '벼슬아치의 임면·출척에 관한 일'이란 뜻도 갖고 있음)는 인물을 진출시키거나 물러나게 하는 중요한 일입니다. 이런 일을 할 때 왕명을 전하는 데 사관이 참여하지 못하니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군주가 말했다. "정사를 대신에게 위임하고 다시 의심하면 되겠는가." 안윤손이 다시 "그 때문이 아닙니다. 왕명

70) 『중종실록』 권3, 2년 8월 26일.
71) 『중종실록』 권4, 2년 10월 5일.
72) 오항녕, 위의 책, 288쪽.

을 내릴 때 기록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했다. 군주는 승지도 기록할 수 있다고 했는데, 도승지(都承旨) 김승경(金升卿)이 말하기를 "선대(先代)에 언관을 정방(政房)에 들게 했다가 옳지 않다고 해 그만두었으니 사관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했다.[73]

정사의 왕명을 전하는 데 사관이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은 도승지 김승경의 말에서 확인할 수 있듯, 정청의 논의 과정에 참여해 기록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사필로 정청 인사를 감시하겠다는 선언과도 같다. 현대 언론도 개척하지 못해 탐문취재에 그치고 마는 청와대나 정부 각 부처의 인사에 대한 논의를 현장에서 취재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는 것으로, 권력 쪽에서 보면 무모한 도발과 같은 것이었다. 그래서인지 성종대에는 정청 입시 논의는 더 이상 진전되지 않는다. 정청 참여 문제가 또다시 논의된 것은 그로부터 20년 가까이 지난 연산군 3년 때였다.

기사관 이유녕(李幼寧)이 말했다. "정청에는 군주의 전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조와 병조가 인물을 주의(注擬, 관리)하는 곳이므로 당연히 기록 대상입니다. 앞으로 정청에 승전(承傳) 내관이 출입할 때 사관도 참여하게 하십시오." 군주가 전례가 어떤가 하고 물었다. 기사관 정희량(鄭希良)이 사관은 정청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 있다고 답했다. 이유녕은 다시 "잡인이라면 정청에 참여할 수 없지만, 사관은 국가의 기밀까지 기록하는 데 하물며 정청이겠습니까" 했다. 윤필상(尹弼商)은 "선왕대(先王代)에 전례가 없고 승지도 겸춘추(兼春秋, 겸임사관)로 정청에 참여하니 사관은 들어가지 않더라도 되옵니다" 했다. 정희량이 다시 말하기를 "옛날에는 지방과 여항(閭巷)에도 야사(野史)가 있었는데, 사람을 등용하는 대정(大政, 해마다 음력 섣달에 행하던 문무반의 인사)이겠습니까" 했다. 군주가 "듣고 보니 사관이 참여한다고 해서 폐단이 될 것은 없겠다. 다만 전례가 없는 일이라 가볍게 바꿀 수는 없으니 잘 의논해 처리하라" 했다.[74]

사관 이유녕의 발의로 재개된 정청 입참 논의는 윤필상 등 재상들의 관례를 내세운 반대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으로 검토되는 듯했다. 하지만 한 달 후인 연산군 3년 8월의 논의에서 원점으로 돌아간다. 어세겸(魚世謙)·정문형(鄭文炯)·한치형(韓致亨) 등의 의견은 다음과 같았다.

모든 정사에는 승지가 참여합니다. 기록할 일이 있으면 이들이 쓸 것이니 꼭 사관이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사란 국가 경영의 대강(大綱)으로 일시의 소견으로 규례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또 비목(批目)이 내려오면 용인(用人)의 적합성 여부는 사람들

73) 『성종실록』 권110, 10년 윤10월 24일.
74) 『연산군일기』 권25, 3년 7월 29일.

의 이목에 퍼져 사관의 기록을 기다리지 않아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사이에 잘못이 있으면 언관이 논계(論啓)할 것이니 정사에 관한 기록이 누락되지는 않을 것입니다.[75]

어세겸 등의 반대 논리는 얼추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 사관이 정청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정사와 관련된 기록을 확보할 수 있고, 인사 결과가 발표되고 나면 금방 입살에 오르내리게 마련이어서 공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인사 관리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관료체계의 운영원리가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어세겸 등은 그것을 '大綱'으로 표현했다.

그렇지만 사관은 다른 견해를 품고 있었을 것이다. 사관의 정청 입시 그 자체가 감시역할을 함으로써 공정하고도 투명한 인사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신념이 그들을 정청 앞으로 전진시킨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연산군 3년(1497) 때 재개된 정청 입시 논의는 10년(1504)에 이르러 화를 불러온다.

전교하기를(연산군) "전날에 경연(經筵)에서 사관도 정청에 참여하자고 말한 자가 있었는데, 그 자의 얼굴은 검고 수염이 많았는데, 필시 이현보(李賢輔)일 것이다. 관직에 나온 지 얼마 안 되는(新進) 주제에 감히 (國事)를 의논했으니 절대 안 될 일이다. 잡아다 곤장을 치라. 이현보 전에도 이에 대해 말한 자가 있을 것이니 아울러 조사해 보고하라" 했다.[76]

조사보고는 연산군 11년(1505) 2월에 이루어진다. 춘추관 당상(堂上) 유순(柳洵)이 시정기를 조사해 정청 입참에 대한 논계 사실을 보고했는데, 이 보고를 통해 이현보가 연산군 8년(1502) 10월 정청 참여를 청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현보에 앞서 정청 입시를 논했던 이는 이유녕이었다. 이 일로 이현보는 국문을 당했고, 이미 연산군 10년 갑자사화(甲子士禍) 때 임사홍(任士洪)의 무고로 참형을 당한 이유녕은 다시 시신의 뼈를 부수었는지 확인하라는 처분을 받았다.[77]

여기서 보여준 극명한 사실은 사관제도에 대한 일반적 합의가 깨졌다는 점이다. 연산군에게 사관은 자신이 권력의 정점에 있는 관직체계의 말단 관리에 불과했던 것이다. 그의 그런 사관에 대한 태도는 신진(新進)으로서 국사(國事)를 논했다는 이유로 국문하는가 하면, 이미 죽임을 당한 사람에게까지 몹쓸 명을 내리는 데서 잘

75) 『연산군일기』 권26, 3년 8월 1일.
76) 『연산군일기』 권56, 10년 12월 24일.
77) 『연산군일기』 권57, 11년 2월 8일.

드러난다.[78]

연산군의 사관 탄압은 그의 폭압정치가 극에 달하던 말기에 진행된다. “언관으로 언사가 무례한 자를 사관으로 하여금 써서 아뢰도록 하되, 만약 바른대로 쓰지 않으면 형신(刑訊)을 면하지 못하리라”며 언관과 사관을 동시에 겁박(劫迫)했고, 시정기는 5년에 한번만 수찬하도록 했다. 쓰지 않아야 할 일을 기록하면 죄로 다스린다는 엄명도 내렸다. 자신의 재위 기간에 실록을 편찬하기 위해 가장사초를 거두어들였으며, 가장사초를 내지 않거나 고친 자는 중죄로 다스렸다. 반정(反正)이 일어나기 보름 전에는 사관에게 시정(施政)만 기록하고 군왕의 일을 기록하지 못하도록 하는 전교를 내리기도 했다.[79]

파란 끝에, 정청 입시는 중종 10년(1515) 이루어진다. 그 후에도 여러 번 변화를 겪지만, 일단 그것이 정당하다고 사회적으로 인정받았던 점에 의미를 두어야 할 것이다.

정청 출입 사관 가운데 가장 돋보이는 인물은 중종대 백인걸(白仁傑)이었다. 그는 정청 출입을 아주 부지런히 했다. 『연려실기술』에 따르면, “백인걸이 예문관 검열이 되자 하찮은 신진으로서 이미 폐지되었던 직무를 회복해 붓을 잡고 부지런히 도목정사(都目政事, 매년 음력 6월과 섣달에 관리의 성적을 매겨 인사이동을 행하던 일)에 쫓아다니니 이조(吏曹)에서 그를 매우 꺼려했다”[80]고 기록하고 있다.

백인걸은 조광조(趙光祖)의 문인으로 기묘사화(己卯士禍) 당시 스승과 동지를 잃고 금강산으로 들어갔다가 돌아와 1537년 식년문과에 급제해 성균관에 배속되었고, 그 후 예문관 검열(전임사관)로 자리를 옮겼다. 그는 명종 때 을사사화(乙巳史禍)가 일어나자 소윤세력의 미움을 받아 파면되었다가 안변으로 귀양 가는 등 여러 차례 고난을 겪으면서도 지조를 잃지 않았고, 선조 때 청백리에 선발되었다.

이유녕·이현보 같은 이들의 희생으로 어렵사리 손에 넣은 ‘정청 출입증’을 오늘의 기자의 경우 인사권자한테 무상으로 반납해버린 셈이어서, 지금 정청 취재길은 튼튼하게 막혀 있다. 며칠이 지난 뒤에야 확인되지도 않은 뒷얘기 정도 쓰는 것으로 만족할 뿐, “조선 사관들이 따낸 정청 출입증을 다시 돌려 달라”며 소리치는 기자 하나, 기자단체 하나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이다.

---

78) 오항녕, 위의 책, 292쪽.
79) 박홍갑, 위의 책, 197~200쪽.
80) 『練藜室記述』별집 권7, 官職典故 藝文館條. 『국역 연려실기술』, 제10책 관직, 민족문화추진회, 1966년. 박홍갑, 위의 책, 64쪽.

4. 비공식 정사 및 행사 참여 다툼

국왕이 참여하는 정사 가운데 조참·상참·조계·윤대 등이 공식 정사에 해당한다면, 독대·인견 등은 비공식 정사라 할 수 있다. 또 경연 등을 공식 행사로 간주할 수 있다면, 행행·예연 등은 비공식 행사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국왕이나 권신 등은 이런 비공식 정사 및 행사에 사관이 참여하는 것을 매우 꺼려했으나, 사관은 '바늘 가는데 실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식으로 밀착취재하고자 했다. 국왕과 신하 사이에서 발생한 모든 것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사초(史草)에 올려야 한다는 소명의식 때문이었다.

1) 비공식 정사

조선은 신하가 단독으로 국왕을 만나 정치에 관한 의견을 아뢰는 독대를 엄격히 금지했다. 공개정치를 지향하는 조선이었으므로 독대가 이루어지면 사관은 말할 것도 없고 관료들의 시선도 집중되었다. 성리학적 공도(公道)에 따라 공정하게 정책을 결정하고 참언(讒言)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또 국정뿐 아니라 사적인 일까지도 논의할 수 있는 비정상적인 정치구조여서 독대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독대의 기초는 세종이 깐 셈이었다. 세종 말 '밀의(密議)'라 하여 사관을 따돌린 채 대신 몇몇과 국사를 논의한 적이 종종 있었는데, 이 경우 독대는 아니지만 그 구성과 방식으로 보면 독대의 연장이라 할 수 있어서다.

사관이 독대에 입시하는 것은 윤대보다 어려웠다. 그것은 성종 5년(1474) 10월 논의에서 성종이 대신과의 독대는 사적인 일이 아니라고 말했던 데서 살필 수 있다. 또 그 한 달 전 신숙주(申叔舟)가 성종과 독대했을 때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던 데서도 독대 입참의 어려움을 짐작할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당시 사관이 신숙주의 독대 현장에 들어가 취재는 못했지만 전임사관 중 누군가 한 사람이 독대의 이유에 대해 사론(史論)으로 작성하게 된다는 점이다. '입시에 배제되어도 사관은 기사를 쓴다'는 일념을 실천해 보인 점에 관심이 머물러야 한다는 것이다. 『성종실록』에 나와 있는 그 사론은 다음과 같다.

사신(史臣)은 논한다. 이날 경연의 여러 신하들은 모두 나가고 신숙주만 홀로 남아서

아뢰고 사관은 듣지 못했다. 대저 김이정은 신숙주에게 족친이 되어 지평·정랑의 자리에 이르렀는데, 이제 장차 장신(丈訊)하려고 하기 때문에 신숙주가 김이정이 장죄(杖罪)에 처해질 것을 염려해 이 밀계(密啓)가 있었다.[81]

당시 신숙주는 영의정이자 원상(院相)으로 어린 성종을 돕고 있었는데, 신숙주의 족친인 형조정랑(刑曹正郎) 김이정이 국가 소속 노비를 자신의 사노비처럼 부려먹고 가포(價布)를 거두어 사사로이 썼다는 사헌부의 탄핵을 받자, 김이정의 죄명이 장안(臟案)에 오르지 않도록 구명운동을 벌인 것이다. 조선시대에는 장리(贓吏, 뇌물죄를 지은 관리) 명부인 장안에 올랐다 하면 자손들까지도 관직에 나갈 수 없었다.[82]

이후 사관의 입시가 가지는 의의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면서 독대에 대한 견제도 강화된다. 성종 8년 7월 대사간(大司諫) 손비장(孫比長)은 경연에 남아 있다가 언관과 사관이 없을 때 독대하는 경우가 있다고 주의를 환기시키기도 했다. 손비장의 지적에 "누구냐"고 물을 정도로 성종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독대의 주인공은 한명회(韓明澮)였다.[83] 그 지적이 뜨끔했는지 훗날 한명회는 독대를 한 뒤 사관과 승지에게 그 내용을 알려주기까지 했다.[84]

대신이란 정치적 지위나 종친이란 국왕과의 사연(私椽)으로 인해 정치 상황에 따라 독대의 가능성은 상존했다. 그러나 사관 등의 주도로 수차례 격론을 거듭한 끝에 성종대에 이룬 독대 불가에 대한 관료사회의 합의는 권력의 사유화에 따른 전횡을 억지하는 효과가 있었다. 사관의 입참을 배제하는 독대가 만연할 때 권력의 전횡이 나타날 수 있으며, 그렇기에 사관은 그 전횡을 방지하는 정치 운영상의 장치였던 것이다.

그런 합의를 깬 것이 중종대의 이줄(李茁)사건이다. 이줄이 추국에 관한 일로 독대를 요구했는데, 홍문관에서 이를 나중에 알아차리고 "대역(大逆)의 변이라도 반드시 사관이 참여한 가운데 처결해야 한다"며 이줄을 밀계한 죄로 다스려야 한다고 청했던 것이다.[85]

이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이후 독대는 드문 일이 되었다. 효종 말기 이조판서(吏曹判書) 송시열(宋時烈)의 독대와 숙종 43년(1687) 좌의정 이이명(李頤命)

81) 『성종실록』 권47, 5년 9월 12일.
82) 박홍갑, 위의 책, 174~175쪽.
83) 『성종실록』 권82, 8년 7월 22일.
84) 『성종실록』 권123, 11년 11월 9일.
85) 박홍갑, 위의 책, 180쪽.

의 독대가 있었을 뿐이다. 그중 이이명의 독대는 엄청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86] 우의정 등을 지낸 당시 82세의 고령인 윤지완(尹趾完)은 숙종이 독대 후 세자에게 청정(聽政)의 어명을 내리자 고향에서 관(棺)을 들고 수도(首都)로 올라와 독대를 통박하고 "세자 청정이 아직 시기가 이르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또 이이명을 가리켜 "대신(大臣)은 국왕의 사신(私臣)이 아니다"고 논박했다. 군주와 신하의 관계는 나라를 매개로 맺어진 공적 관계이지 사적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나라의 공적 행위는 해처럼 밝아야 한다는 박론(駁論)인 것이다.[87]

조선이 이토록 독대를 경계한 것은 기록을 남길 수 없었다는 데에 있다. 설령, 독대를 하더라도 사관이 현장을 취재하면서 역사의 눈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사관과 언관 등의 일관된 입장이었다.

국왕이 무시로 대신 등을 불러들이는 인견 때도 사관은 쫓겨나는 신세를 면하지 못했는데, 성종대에 들어서면서 나아진다. 세조대의 경우 경회루에서 도승지 조석문(曹錫文)을 인견할 때 조석문은 사관의 입참을 저지했다.[88] 이조판서 한명회를 인견했을 때도 세조는 사관의 입시를 허락하지 않았다. 이때 세조가 자신이 사관의 입참을 막았던 예를 사실대로 적어 훗날의 거울로 삼으라고 했던 말[89]은 일견 사관의 기록을 존중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관의 기록이란 것이 세조 자신에게 현재적 가치가 없다 함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성종 4년(1473) 성종이 장령(掌令) 김자정(金自貞)을 인견하면서 사관의 입시를 불허하자 경연관인 설경(說經)을 겸하고 있던 전임사관 변철산(卞哲山)이 그 부당함을 지적한다. 그때 성종은 "도승지가 기록했을 터이니 가서 물어보면 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자 변철산은 재차 건의한다. "겸임사관이 있어도 전임사관의 직무는 별도로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인데, 결국 성종이 그 잘못을 인정하게 된다.[90] 이는 승정원(承政院)이 담당하는 『승정원일기』와 전임사관이 작성하는 사초가 갖는 위상의 차이를 낳게 되는 이유가 되었다.[91]

조선 사관은 이처럼 비공식 정사로 여겨지는 인견 때도 '입참 불가'란 관행을 뛰어넘어 역사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저항했다.

---

86) 박홍갑, 위의 책, 180쪽.
87)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7권,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년, 323쪽.
88) 『세조실록』 권9, 3년 10월 24일.
89) 『세조실록』 권14, 4년 9월 12일.
90) 『성종실록』 권32, 4년 7월 30일.
91) 오항녕, 위의 책, 280쪽.

지금은 어떠한가. 마치 독대·인견 세상이라도 온 듯 하다. 독대·인견이 하나의 관행으로 굳어져버렸기 때문이다. 대통령과 누가 독대하더라도, 혹은 대통령이 누구를 인견하더라도 언론마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이 땅의 현실이다. 저항은커녕 아무런 논쟁도 하지 않는다. 비근한 예를 들어보자. 2000년 9월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만남 때도 그랬다. 청와대 쪽이 '비공개 회동'이라며 출입기자의 취재를 봉쇄했지만, 기자들은 큰 논쟁 없이 수용한 것이다. 이 대목에서도 기자의 기록정신 퇴행은 확인되며, 기자정신과 사관정신 간의 간극을 보게 된다.

2) 비공식 행사

지금부터는 사관 등이 행행·예연 등 비공식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공들인 흔적들을 찾아보기로 한다.

행행에서도 전임사관 민인생(閔麟生)의 족적은 돋보인다. 『태종실록』 권1 원년(1401) 3월 18일자 기사로 그의 기개를 보자. 태종이 무관 10여 명과 매사냥을 하러 강가로 나가자 민인생이 얼굴을 가리고 따라나선다. 민인생을 본 태종이 "무엇하러 왔는가"라고 묻자 "신(臣)이 사관으로서 맡은 바 본분을 다하지 않을 수 없어 왔습니다"라고 대답한다. 마침 옆에 있던 이숙번이 "사관의 직책이 중요하니 원컨대 눈감아주십시오"라고 지원 발언을 해 무사히 넘어갈 수 있었다.

태종 4년(1404) 2월 8일, 이번에는 태종이 말을 타고 노루사냥을 하다가 말이 넘어지는 바람에 낙마하게 된다. 다행히 몸은 다치지 않았다. 태종이 좌우를 둘러보며 황급히 한 말이란 "이 일을 사관이 알지 못하게 하라"였다.[92] 하지만 "사관이 모르게 하라"고 지시한 정황까지도 『태종실록』에 실리고 만다. 이 사건은 전임사관과 태종 간의 긴장관계를 단적으로 보여줌과 동시에 사관의 기록정신을 웅변하는 사례로 활용되고 있다.

세종 원년(1419), 그러니까 태종이 수강궁(壽康宮)에서 국가의 대사(大事)와 군무(軍務)를 보고받아 처결하고 있을 때 세종은 창덕궁(昌德宮)에서 상왕인 태종이 있던 수강궁까지 매일 문후했는데, 이때 사관을 따라오지 못하도록 했다. 원숙(元肅)이 사관과 함께 할 것을 청했으나, 세종은 부왕 태종이 그랬듯이 승지도 겸임사관

92) 『태종실록』 권7, 4년 2월 8일.

이라며 거절한다.[93] 그 후에도 태종을 만나러 갈 때 같은 이유로 사관을 배제했는데,[94] 부왕의 주요 기피인물 가운데 하나가 사관이란 점을 잘 알고 있어서 취한 조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단종대에는 행행의 관례가 바뀐다. 단종 2년(1454) 사간원(司諫院)에서 소능(昭陵) 행차 때 사관을 대동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건의하자 단종이 받아들임으로써 관례가 바뀐 것이다.[95]

성종 2년(1471) 공혜왕후(恭惠王后)가 친정인 한명회의 집으로 행행할 때에도 사관이 따라갔는데, 비록 중궁의 사례이지만 단종 때 대소(大小) 행행에 사관이 수행하도록 했던 전례를 따른 것으로 보인다.[96]

사관의 입참 범위가 일견 사소한 듯 보이는 예연 등의 영역으로까지 확대된 것은 성종대 후기에 들어서였다. 정종 때 사관 김섭(金涉)은 양청(凉廳, 후원)에서 베풀어진 잔치에 참석했다가 국왕의 "저건 무슨 사람인가"라는 말끝에 내쫓김을 당했다[97]는 기사와 태종 때 사관이 공신 연청(宴廳)에 참여하지 못하고 쫓겨났다[98]는 기사에서도 영역 확장을 위한 사관의 감투정신을 살필 수 있다. 『태종실록』 권1 원년(1401) 6월 22일의 기사는 사관이 내쫓기면서 대드는 장면을 담은 것으로, 기록정신의 일단을 보여준다.

> 군왕이 청화정에 나가 대신들에게 잔치를 베풀고 밭과 노비를 상으로 주었다. 사관이 참여하려 하자 문지지가 저지했다. 김과(金科)가 사관 노이에게 "승지가 모두 겸임사관이어서 군주의 언동을 충분히 기록하고도 남는데 사관이 왜 또 들어오려 하는가" 했다. 사관은 "그러면 사관이란 직책을 없애는 것이 좋겠다"며 언성을 높였던 것이다.

전임사관 노이의 저항은 이 땅의 기자들에게 강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청와대가 최근(『한겨레』 2009년 10월 2일자 4면 참조) 2명의 기자가 출입하고 있는 일부 신문사에 "출입기자를 한 명으로 줄여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했기 때문이다. 신문사가 자율적으로 판단할 일을 청와대가 압박한 것이다. 청와대에서는 공식·비공식 정사는 물론이고 공식·비공식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함은

93) 『세종실록』 권5, 원년 9월 4일.
94) 『세종실록』 권8, 2년 4월 28일.
95) 『단종실록』 권12, 2년 10월 9일. 『단종실록』 권12, 2년 10월 11일.
96) 오항녕, 위의 책, 274쪽.
97) 『정종실록』 권5, 2년 9월 8일.
98) 『태종실록』 권1, 원년 2월 22일.

만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다.

성종대 초기에는 사관의 예연 입시에 뚜렷한 정칙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성종 7년(1476)에는 종친과 문무 고관의 연회에 사관이 입참했지만, 11년(1480)의 종친연에는 사관이 들어가지 못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종친과의 관사(觀射)에도 마찬가지였다.[99]

성종 11년(1480) 종친연에 사관이 따돌림을 당하자 사헌부 지평(持平) 복승정(卜承貞)이 불가를 주장한다. 성종은 "이미 예연이 끝나고 곡연(曲宴)이 진행 중이니 더 이상 거론하지 말라"[100]고 한다.

그 이틀 뒤 대사헌 김양경(金良璥)이 다시 종친연 입참 문제를 꺼냈을 때 성종은 "종친연이란 것은 사사로운 잔치이므로 공식적인 행사와 달라 사관이 입시할 필요가 없다"고 잘라 말한다. 김양경은 "국왕의 언행은 모두 정도(正道), 즉 공적이고도 객관적인 표준이 되는 것이며 사적 영역은 없다"며 소신을 굽히지 않는다. 그때 성종이 좌우 신료들에게 물었는데, 모두 김양경의 손을 들어준다.[101] 그렇지만 예연 입시는 성종 21년(1490) 8월에야 이루어진다.[102]

이처럼 비공식 정사나 행사에까지 사관이 진출하려 했던 것은 군주에게 사적 영역은 없다는 신념, 곧 군주의 모든 언행을 공적인 것으로 간주하려 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사관은 비공식 정사나 행사까지도 공식적인 정치활동의 하나로 인식했던 것이다.[103]

제2절 사초 작성여건 개선 요청

조선 사관은 입시범위 확대 투쟁을 통해 사초 취재 영역을 크게 확장시키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그것만으로 만족하지 못한다. 입시 순서·입시 위치·입시 자세 등 열악한 사초 작성여건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제대로 취재활동을 할 수 없을 뿐

99) 오항녕, 위의 책, 286쪽.
100) 『성종실록』 권114, 11년 2월 28일.
101) 『성종실록』 권114, 11년 2월 30일.
102) 『성종실록』 권243, 21년 8월 23일.
103) 오항녕, 위의 책, 285·287쪽.

아니라, 더 정확하고 더 세세한 정보에 접근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판단 때문이었다.

『조선왕조실록』을 뜯어보면 입시환경의 그악함이 금방 눈에 들어온다. 그것은 사관이란 특수 임무가 전혀 고려되지 않은 '늦게 들어가고 먼저 나오는' 관행을 따를 수밖에 없는 '후입선출(後入先出)', 그것도 전내(殿內)로 들어가지 못한 채 계단에 엎드려 필기구도 소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취재활동을 했던 것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실록은 그런 고약스런 여건을 딛고 태어난 것이어서 그 위대함이 더욱 돋보인다 할 것이다.

본래 조참이나 상참·조계·경연 같은 일이 있으면 관원의 입참·퇴출에는 품계(品階)에 따른 순차가 있어서 '들어갈 때는 상위자부터, 나갈 때는 하위자부터'라는 관례를 따라야 했다. 사관의 경우 하위직이었으므로 '늦게 들어가고 먼저 나와야' 하는 '후입선출'이란 출입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 관행을 깨기 위한 사관의 도전은 세종대부터 강도 높게 진행되며, 입시 위치 및 입시 자세 개선 논쟁과 동시병행적으로 이루어진다.

세종 7년(1425) 춘추관의 영사 이원(李原)은 사관이 나갈 때는 승지가 나가기를 기다린 뒤에 물러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간(諫)했다.[104] 이 건의가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아 '선입'은 아니더라도 '후출'은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성종 5년(1474) 전임사관 강거효(姜居孝)가 올린 상소에 대한 논쟁이다.[105]

> 예문관 봉교 강거효 등이 말했다. "신(臣)들이 보잘것없는 능력으로 사관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그나마 사관의 직사(職事)를 다하려고 합니다만, 근자에 갖추어진 제도만 고식적으로 따라 옛날에 사관을 두었던 취지와는 맞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조계나 크고 작은 연향(宴享) 때 신들은 계단에 엎드려 있어 전내의 말소리는 멀어서 들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둘째는 경연이 끝나고 신들이 먼저 나오는 까닭에 전하의 반문이나 대신(大臣)의 견해를 들을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니, 원상(院相)들에게 의논하게 했다. 그러자 정인지(鄭麟趾) 등이 말했다. "사관은 국초 이래로 (경연에서는) 승지 뒤에 앉아 있었고, 조계 때에도 정부(政府)와 육조(六曹), 언관이 나간 뒤에 승지와 함께 물러갔으므로 언관의 계사라고 못 들을 일이 없습니다. 꼭 전하 좌우 가까이 앉아야만 기사(記事)한다고 하겠습니까. 예전대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말했다.

104) 『세종실록』 권29, 7년 11월 3일.
105) 『성종실록』 권47, 5년 9월 23일.

당시 성종은 이 위기 국면을 강변으로 넘긴다. “대신이 먼저 들어오고 늦게 나가면서 논의하는 것이 국가와 관련된 일이고 사사로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잘라 말한다. 또 “멀어서 들리지 않는다고 한 것도 선정전(宣政殿)처럼 좁은 곳에서는 사관이 밖에 있다 해도 문제가 되지 않고, 편전인 선정전보다 큰 정전인 인정전(仁政殿)이라 해도 사관이 전내에 들어온 적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전내 입시를 허용하지 않는다.[106]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것은, 이미 세조 2년(1420) 경복궁(景福宮) 편전인 사정전에서 상참을 할 때 사관의 전내 입시를 허용했던[107] 사례가 있는데도 전례가 없다는 성종의 말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세조 2년(1420) 사관의 전내 입시가 일시적인 조치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관례가 되지 않은 것만은 사실인 것 같다.

첨예한 대립을 보인 이 논쟁은 결국 성종이 강거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더 많은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관행 파괴 작업’이란 데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어 중종대에도 이 문제에 대한 논란은 계속된다. 중종 10년(1515) 전임사관(봉교) 허흡(許洽) 등은 입시 때 사관의 ‘후입선출’로 인한 문제점과 상참·조참 때 사관이 전외에 부복하므로 가부(可否) 논의를 잘 들을 수 없어 앞으로 나가는(前進) 경우가 발생한다고 건의했다.[108] 이 가운데 전외 문제는 중종이 받아들여 전내로 시정되었고, 기사할 때에 ‘전진’하는 것도 좋다고 승낙했으나, 입시 순서만은 여전히 진전을 보지 못한다. 4년 뒤 기사관(記事官) 신잠(申潛)이 또다시 늦게 입시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지만 먼저 나가는 것은 불가하다[109]며 ‘후입후출(後入後出)’을 주장하자 중종이 옳다고 해 일단 ‘후입후출’로 가는 듯했지만, 6개월 뒤 본래의 ‘후입선출’로 돌아서고 만다. 사관의 잇따른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후입선출’이란 관행을 깨지 못했던 것이다.

사관의 입시 자세에 대한 문제점이 집중 거론된 것은 성종대였다. 검토관(檢討官) 황계옥(黃啓沃)이 성종 16년(1485) 건의한데 이어, 20년(1489) 전임사관(검열) 이주(李胄)가 다시 발의한 것이다. 다음은 이주의 발의 내용과 성종의 답변이다.[110]

신(臣) 등은 직책이 일(역사)을 기록하는 데 있사온데, 무릇 신료들이 일을 아뢸 때에

106) 『성종실록』 권48, 5년 10월 6일.
107) 『세조실록』 권3, 2년 4월 13일.
108) 『중종실록』 권23, 10년 9월 19일.
109) 『중종실록』 권36, 14년 6월 2일.
110) 『성종실록』 권231, 20년 8월 27일.

땅바닥에 엎드리어 머리를 들지 못하므로 다만 그 음성만 듣고 용모를 보지 못하니 어찌 능히 그 사람을 분변(分辨)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으로 인하여 일을 기록하는 데 의심스러운 점이 없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신(史臣)은 직필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온데, 의심스러운 점이 있으면서도 감히 기록하니 신은 마음이 편치 못한 바입니다. 또 옛 일을 가지고 상고해보면 '발연(發然)히 얼굴빛이 변했다' 함이 있고, '용모가 태연자약하다' 함이 있고, '성색(聲色)이 모두 노기를 띠었다' 함이 있고, '부끄러운 빛이 있다' 함이 있고, '군주가 좌우를 돌아보며 다른 사람에게 말했다' 함이 있습니다. 옛날의 사신은 용색(容色)과 언모(言貌)를 모두 기록해 후세에 전했으니 땅에 엎드리어 일을 기록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성종이 명을 내린다. "이제부터 사관은 앉아서 일을 기록하라(坐而記事).

위에서 보듯, 성종 말년 무렵이 되어서야 비로소 사관이 좌우로 나누어 지필을 들고 들어와 앉아서 기록할 수 있게 되었다. 이때 사관이 전내에 들어왔는지의 여부는 분명하지 않으나 전후 사정으로 미루어 전내 입시가 허용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지필 소지의 경우 사실은 이보다 앞선 세종 7년(1425)에 이미 필기구를 들고 입참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그 후 언제인가 다시 지필을 소지할 수 없도록 조처했던 것으로 추측된다.[111]

입시자세 개선은 조선이 개국한 지 거의 100년 만에 일구어낸 결실로, 하나의 제도가 정착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요구되는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지만, 그 시간을 앞당기기 위한 에너지원(源)은 온전히 사관정신에 있음을 본다. 만약 강거효나 이주 같은 형형한 눈빛을 가진 전임사관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그 역사적인 수확은 100년이란 시간을 훨씬 넘겼을지 모를 일이다. '푸른' 사관정신이 결실의 시간을 단축시킨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얘기다.

이주의 경우 성종 앞에서 입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기염을 토했던 것도 대단한 일로 여겨지지만, 성종과 권신 설득용으로 예비한 고사(故事)를 인용하는 대목에 이르면 그의 사관정신은 '치열함'을 넘어 '매우 지혜롭다'는 표현이 어울린다. 사람의 용색과 언모가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고사에서 끌어다 쓴 것 등이 그것으로, 『성종실록』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으나 성종이 그의 논리에 설득당해 선뜻 "이제부터 사관은 앉아서 기록하라"고 전교를 내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이주가 인용한 고사는 지금의 기자도 명심해야 할 경구와도 같은 것이다. 취재기법 또는 관찰기법의 기본에 해당하는 것이 용색과 언모의 분변이기 때문이다. 수습

111) 오항녕, 위의 책, 285쪽.

기자 교육 때 그런 것들을 필수적으로 주입시키고 있음도 그래서다.

만일, 지금의 기자가 성종 20년(1489) 이전의 악조건 아래서 취재활동을 한다면 몇이나 견디어낼 이 있을 것인가에 눈을 돌려보자. 아마도 "기자 못해먹겠다"며 펜을 던져버리는 이직사태가 속출할 것이다.

제3절 승지-사관 갈등관계

태종이 즉위하자마자 왕명 출납을 위해 설치한 기구가 승정원이었다. 지금의 대통령 비서실에 해당하는 승정원에는 도승지(都承旨)·좌승지(左承旨)·우승지(右承旨)·좌부승지(左副承旨)·우부승지(右副承旨)·동부승지(同副承旨) 등 육승지(六承旨)를 두었으며, 이들은 모두 정3품 당상관이었다.

육승지에게 왕명 출납 외에 사관을 겸하게 해 역사 기록자 임무를 부여한 군왕도 태종이었다. 문제는 그들이, 혹은 국왕이 '승지도 사관을 겸하고 있으므로'라는 논리를 전임사관 출입 방어용으로 전가(傳家)의 보도(寶刀)처럼 애용한 데서 사관과 승지 사이에 갈등이 상존했다는 데 있다.

전임사관과 승지가 불편할 수밖에 없었던 원천적 이유를 찾아내려면 그들의 직무의식 속으로 들어가 보아야 한다. 전임사관의 주 임무가 '실록을 편찬하는 데 가장 중요한 자료인 사초의 작성'인 것에 비해, 승지는 '왕명 출납'이었으므로 전임사관이 역사라는 이상을 추구했다면, 승지는 국왕을 그림자처럼 근시(近侍)하면서 권력의 입노릇에 충실한 현실을 추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서로의 직무에 신명을 바쳤던 것이며, 그러다보니 불가피하게 갈등과 대립 양상을 보였던 것이다.

승지와 품계를 비교해보면 참하관(參下官)인 말직이긴 했지만, 어떤 관료들보다도 지조와 의기가 넘치는 관료가 전임사관이었다는 점도 양자의 불편한 관계에 일조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전임사관이란 조직이 문과를 갓 급제한 젊은 엘리트들로 구성되어 있을 뿐 아니라, 전도가 양양한 청요직이었기 때문이다.

전임사관-승지의 대립은 대체로 입시 문제가 사단이 되었다. 그것은 사관제도가 정착되어가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대두되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무릇 성장에는 고통을 수반하듯, 결과론적이긴 하지만 양자의 긴장관계가 사관제도의 발전을 위한 통과의례와도 같은 것으로 파악할 필요도 있다.

전임사관의 영역을 축소하려는 발의는 맨 처음 승지 쪽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다. 태종 때 경연청(經筵廳)의 시독관(侍讀官) 김과(金科)가 선두주자였다. 승정원의 승지들이 모두 겸임사관이므로 전임사관이 입시하지 않더라도 군주의 일동일정(一動一靜)을 기록할 수 있다[112]는 그의 주장에 따라 경연청 입시가 일시 금지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다음달 문하부(門下府) 낭사(郎舍)의 건의로 전임사관의 좌우 입시를 다시 허락하게 되었다.

그 후 태종 원년(1401) 5월, 경연(經筵) 후 주연이 벌어지고 있을 때 전임사관 민인생(閔麟生)이 국왕에게 이렇게 직언한다.

> 지금 여러 신하들과 더불어 강론하심이 매우 정(精)하고 온화한 말씀이 친밀하시니, 원컨대 전하께서 비록 편전에 앉아 정사(政事)를 들으실 때라도 사관으로 하여금 입시해 아름다운 말을 기록하게 하소서.[113]

입시 투쟁 선구자이자 최대 희생자(귀양)인 민인생은 며칠 전 4월에도 도승지 박석명(朴錫命)을 밀치고 태종 앞으로 나아가 설전을 벌였던 인물이었다.

그러자 이번에는 승지 박신이 민인생의 말을 자르고 끼어든다. 경연 입시는 가하지만, 정사를 보는 데는 승지들이 입시하기 때문에 필요 없다는 것이었다.[114] 태종의 불허 논리와 하나도 다를 게 없음에 주목해야 한다.

본래 승지는 조계가 끝나면 언제든지 계사(啓事)할 수 있었고, 또 수시로 왕명을 출납해야 했다. 그 경우 단독으로 입시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당직사관이 따라 들어가 '있었던 일'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관례였다. 세종 5년(1423) 7월, 이런 관례를 확고하게 다지는듯한 일이 있었다. 당시 지신사(知申事, 도승지에 해당함)는 조서로였다. 어느 날 그는 사관이 따라 들어오는 것을 꺼려해 환관들로 하여금 사관 출입을 제지하도록 했다. 사관들 입장에서는 그냥 넘길 사안이 아니었다. 그때 춘추관 동지사 윤회가 조서로의 일을 세종에게 고해 "사관이 따라 들어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는 분부를 얻어낸 것인데, 그 후에도 국왕이 승지를 불러들일 때 승지가 전임사관을 물리치는 일이 자주 있었다.[115]

문종대에도 국왕이 대신이나 승지를 만날 때 사관을 따돌리고, 조계나 경연에서

112) 『태종실록』 권1, 원년 3월 23일.
113) 『태종실록』 권1, 원년 5월 8일.
114) 박홍갑, 위의 책, 261쪽.
115) 박홍갑, 위의 책, 261~262쪽.

관례에 따라 사관을 먼저 퇴출시켜 나중에 의논한 일을 듣지 못하게 한 적이 있었다. 그때 전임사관(봉교) 이인전이 분개해 불가 상소를 올렸으나, 좌승지 정이한이 나서 "승지도 사직(史職)을 띠었으니 한림이 듣지 않더라도 무슨 손상이 있겠는가"[116]라며 일축했던 것이다.

세조가 단종을 귀양 보내고 금성대군을 참한 뒤 단종의 장인 송현수 등의 재산과 처첩을 공신들에게 분배할 때였다. 도승지 조석문이 세조를 배알하면서 전임사관을 따돌렸는데, 『세조실록』은 윤사로가 조석문에게 접근해 송현수의 딸을 자신에게 달라는 청을 넣었다고 기록하고 있다.[117] 이로 미루어보아, 따돌림을 당한 사관이 밖에서 엿들은 것을 적은 것임을 알 수 있다. "세금과 죽음은 피해갈 수 없다"는 말이 있는데, 이쯤 되면 조선 전임사관의 사초 기록 또한 누구 하나 피해가기 어려운 '그물손'과 같은 것이었다 할 수 있다.

전임사관과 승지와의 대립은 양자의 직무의식에서 형성된 것이기는 하지만, 사관의 근시(近侍) 진입과도 연결 지어 생각해볼 수 있다. 세종 8년(1426) 춘추관 관원을 시신(侍臣)의 반열에 들게 했고, 국가 전례(典禮)를 망라한 『세종실록』의 『오례의(五禮儀)』에서도 근시 관원으로 승지와 함께 사관을 명시하게 된다.[118] 직무상 전임사관도 국왕과 지근거리에 있게 된데다, 승지의 집무실 곁에 사관의 집무실이 따로 마련되어 공간적으로 승지와 같은 위치에서 일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전임사관이 계급은 낮지만 업무상으로는 승지와 거의 대등한 대우를 받게 됨에 따라 양자의 대립이 더 사나워졌을 것이라는 추측이 그래서 가능해진다.

다음의 사건이 그것을 일정 정도 뒷받침해준다. 성종 24년(1493) 승정원에서 전임사관(대교) 정광국(鄭光國)을 시켜 대신들에게 수의(收議)하라고 했는데, 그는 사관이 매번 수의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며 거부한다. 이 일로 승정원은 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전임사관 쪽에서 대신의 수의를 맡는 것은 당연하다고 여겨 그를 추국해야 한다는 계를 올리게 된다. 마침내 승정원과 사관 간에 파워게임이 벌어지고 성종이 중재에 나선 일[119]은 전임사관의 자의식이 잘 드러난 사건이라 하겠다.

승지와의 갈등관계가 그칠 새 없었다는 것은 전임사관이 역사 기록의 영역을 확보하기 위해 늘 긴장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함을 실천적으로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제4절 사초 및 실록 열람과 2대 필화사건

116) 『문종실록』 권7, 원년 5월 9일.
117) 박홍갑, 위의 책, 262쪽.
118) 오항녕, 위의 책, 297쪽.
119) 오항녕, 위의 책, 299쪽.

전임사관이 작성하는 입시사초와 가장사초는 협의의 사초로, 보통 사초라 할 때는 이 협의의 사초를 가리킨다.『조선왕조실록』을 편찬할 때 가장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었던 것이 협의의 사초였다. 조선시대 2대 필화사건(筆禍事件)으로 일컬어지는 민수사옥과 무오사화의 경우 가장사초가 화근이 되었다. 가장사초에는 특정 사실에 대한 역사의 평가뿐 아니라 비밀스런 일까지 상세히 직서(直敍)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또 얼마든지 추가 기록이 가능해 원천적으로 '필화'에 노출되어 있는 셈이었다.

겸임사관이 작성하는 주요 관청의 시행사와『승정원일기』, 개인 문집, 야사(野史) 등은 광의의 사초로 분류할 수 있는데, 실록을 편찬할 때 이용하는 모든 자료는 광의의 사초에 속한다.

1. 사초 및 실록 열람 거부

사초는 국왕조차 마음대로 볼 수 없었다. 사관의 직필을 유지하기 위해 사초의 열람은 그 누구도 불가하다는 합의가 태조대부터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사초는 또 국왕의 마음에 맞도록 쓰라거나 고치라고 할 수 없었으며, 사초에 기록된 내용은 부자와 형제 사이라도 누설하거나 자의 또는 타의에 의해 개서(改書)할 수도 없었다. 실록 또한 사초처럼 열람이 제한되었다.

그 합의는 일부 군주의 '참을 수 없는 안달증'으로 인해 종종 파기되고 말았는데, 그에 따른 사관 등의 저항도 거셌다. 안달증은 태조가 극히 심했다. 그는 사초를 바치게 했다가 대신들의 반대로 좌절되자[120] 당(唐)나라 태종이 실록을 열람했던 고사를 들어 누차 사초를 들일 것을 명한다.[121] 군주가 보고자 하는데 사신(史臣)이 거역한다면 신하된 도리가 아니라는 주장을 펴가며 밀어붙였던 것이다. 이는 역성(易姓) 쿠데타의 당사자로서 그가 어떤 역사적 평가를 받고 있는가에 대한 안달증을 표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 같다. 즉위 이후의 사초와 고려왕조 당시의 행적 등을 기록한 사초까지도 바치도록 종용한 것이 그것을 입증해준다.

태조의 안달증에 반기를 든 것은 사관 신개(申槩) 등이었다. "사관을 설치한 것은 군왕의 언행·정사와 신하의 시비득실(是非得失)을 모두 정서해 숨기지 않는

120)『태조실록』권7, 4년 6월 9일.
121)『태조실록』권14, 7년 윤5월 1일.

것"이라며 "당대의 군신은 역사를 숨겨서 뒷세상에 전했으므로 호령(號令)과 언행을 경계 삼아 감히 잘못된 것을 하지 말게 했다"[122]며 반격했던 것이다. 그들의 거부 논리는 당 태종이 실록을 보았다는 이유로 기롱(譏弄)을 면하지 못한 점, 당 태종보다는 3대(三代, 중국의 夏·殷·周)의 정치를 본받아야 한다는 점, 역사의 교훈을 얻으려면 옛 성현의 글을 보면 될 것이므로 만약 당대 역사를 보게 되면 후계하는 국왕들에게 모범을 보이게 되어 사관의 직필을 막는 요인이 된다는 점 등이었다.

반격을 받은 태조는 대항 논리를 만들어 일을 성사시킨다. "지금 열람하고자 하는 것은 착하고 악한 행실의 자취를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임신년의 왕위에 오를 때에 왕과 신하 사이에 몰래 서로 이야기한 말을 대부분 사신이 알지 못한 것이 많다. 사신(史臣)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알려주려고 한다"면서 "이행(李行)이 일찍이 지신사(知申事)가 되었을 때 그 사실을 기록한 것이 또한 바르지 못했으니 그 외의 사신이 어찌 능히 군주와 신하 사이에 이야기한 말을 다 알겠는가"라며 사초를 기어코 열람하고 만다.[123]

선왕(先王)의 실록 편찬을 마무리하고 난 뒤 그 내용에 대해 안달이 나지 않을 군주는 없을 것이다. 태종도 예외는 아니어서『태조실록』을 열람하고자 했으나, 전임사관 응교 변계량(卞季良)이 찬성과 하륜(河崙)을 제압해 막아냈다.[124]

세종도『태조실록』이 궁금했는지 지신사 곽존중(郭存中)한테『태조실록』을 베껴오도록 지시한다. "『태조실록』에는 비밀로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신(臣)과 하륜이 알고 있을 뿐이고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합니다. 또 한 책을 베껴서 여러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는 것은 불가합니다"[125]라며 반대하는 춘추관 지사(知事) 변계량의 기세가 워낙 강해 포기한다.

세종의 포기는 열람 의지를 완전히 접은 것이 아니었고 훗날로 미루었을 뿐임이 나중에 드러난다. 강직했던 변계량 등『태조실록』편찬자들이 거의 죽고 난 뒤 춘추관에 보관 중인 실록을 열람했기 때문이다.[126] 세종은 부왕(父王)인 태종의 실록도 보고 싶어 했으나,『태종실록』편찬에 참여했던 황희(黃喜)와 신개 등이 끝까지 반대해 뜻을 이루지 못했다.[127]

---

122)『태조실록』권14, 7년 6월 12일.
123)『태조실록』권14, 7년 6월 12일.
124) 박홍갑, 위의 책, 112쪽.
125) 박홍갑, 위의 책, 112쪽.
126) 박홍갑, 위의 책, 113쪽.
127) 김경수,『조선시대의 사관 연구』, 국학자료원, 1998년, 147쪽.

이 같이 왕권에 의해 사초 및 실록 열람 불가 원칙이 무너지게 되자 사관 등이 나서 사초 수납 및 비밀 보장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게 된다. 세종 6년(1424) "사초에 올라 있는 국왕이 살아 있을 경우 사초를 납부하지 않도록 조치해줄 것"을 청해 국왕 승하 후 제출할 수 있게 된데[128] 이어, 긴 논의 끝에 세종 31년(1449) 마침내 '사초 관리 원칙' 6조목을 천명하게 되는 것이다.

> 춘추관에서 보고했다. "본관에 소장하는 사초는 모두 군신의 선악을 기록해 후세에 내리는 것이므로 극히 중요해 다른 문서에 비교할 바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초와 관련해 금방(禁防)이 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 만일 사관이 자신과 관계된 일이라 꺼리거나, 친척이나 친구의 청탁을 듣거나 하여 흔적을 없애려고 사초첩을 전부 훔친 자는 '도제서율(盜制書律)'로 적용해 참(斬)하며 (2) 도려내거나 문지르거나 먹으로 지운 자는 '기훼제서율(棄毁制書聿)'로 논해 참하며 (3) 동료 관원으로 알고도 고발하지 않은 자는 기훼제서율에서 한 등(等)을 낮추며 (4) 사초의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는 자는 '근시관(近侍官)으로 기밀중죄(機密重罪)를 누설한 죄'에 따라 참하며 (5) 위의 사항에 해당되었다가 사면을 받더라도 정범(正犯)은 고신(告身)을 박탈해 영구히 서용(敍用)하지 아니하되, 만일 범인이 죽었으면 추탈(追奪)하십시오. (6) 알고도 고발하지 않은 자와 누설한 자는 직첩(職牒)만 회수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사초의 관리를 엄하게 하십시오" 하니 따랐다.[129]

이 원칙이 공표되면서 사초는 국왕의 전교(傳敎)에 해당하는 국서(國書)의 지위에 오르면서 국가의 가장 중요한 문서로 인식된다.[130]

사초 열람으로 인해 빚어진 조선 최대의 필화사건은 연산군 4년(1498)의 무오사화로, 그 열람의 주인공은 군왕이 아니었고 고위 관료였다. 이 사화로 사관의 붓이 사뭇 흔들렸지만, 중종대에 이르러 사관은 다시 붓을 강건하게 세운다. 중종 2년(1507) 전임사관 김흠조(金欽祖) 등이 "사관의 일을 엄하게 하고, (무오사화 때) 사관으로 죽은 자는 모두 봉작(封爵)·증직(贈職)시키며, 다시 법 조목을 세워 분명히 사국(史局, 실록청)에 보여 공론을 밝힐 것"[131]을 청했다. 그 후 3공(三公, 삼정승)의 계(啓)가 이어지자 중종은 사국의 일을 비밀히 하고, 엄한 법을 세워 연산군 때 무너진 사가(史家)의 필법을 세우도록 했다. 인조 12년(1634)의 기사가 그런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

128) 『세종실록』 권26, 6년 12월 1일.
129) 『세종실록』 권123, 31년 3월 2일.
130) 오항녕, 위의 책, 402쪽.
131) 『중종실록』 권3, 2년 6월 10일.

사신은 군주의 잘잘못과 신하의 현사(賢邪), 그리고 시정(施政)의 시비를 모두 기록하므로 역대 군상(君相) 중에 흉포해서 제멋대로 하는 사람도 사초를 가져다 보지 못했다. 연산군 때 간흉 유자광(柳子光)은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 의논하는 것을 싫어해 사화(士禍)를 얽어 만들었다. 중종반정이 일어나자 비로소 그 폐단을 고쳤다.[132]

이 기사는 연산군대 일부 고위 관료에 의해 저질러졌던 사초 열람이 중종반정 이후 금지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고 그 후 사초 및 실록 열람이 일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다.

'사초 열람'을 '사전 검열'이라 할 수 있는데, 현대 언론에도 사전 검열이란 '검은 손'은 죽지 않고 살아 있음을 본다. 그 검은손은 언론사 안일 수도 있고 밖일 수도 있다. 검은손이 등장할 경우 기자의 펜은 직필을 일탈하곤 하는데, 검은손을 꺾으려면 권신 하륜을 제압한 전임사관 변계량한테서 그 정신의 힘을 배워 와야 할 것이다.

2. 2대 필화사건으로 본 사관정신

1) 기명제와 민수사옥

사초에 작성자의 성명을 기입하는 기명제가 원칙이었는지 무기명제가 원칙이었는지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견해가 다르지만, 여기서는 故 한우근(전 서울대 교수)의 입장을 따르기로 한다. 그는 기명제가 조선왕조 초부터 시행되어왔다[133]고 보고 있다.

사관에게 기명제는 '신분 보장이 안 되어 소신껏 쓸 수 없는 것'이었으므로 혹 같은 존재였고, 그런 만큼 직필이 외풍을 탈 수밖에 없었다. 국왕과 권신 등이 외풍의 실체로, 붓이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기 때문에 권력의 눈치를 살피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아무리 사초 열람을 금지한다 하더라도 실록청 고위 관계자의 경우 실록 편찬 과정에서 사초를 열람할 수밖에 없어, 만약 아무개의 사초를 문제 삼기 위해 누설하게 되면 당시의 권력구조상 화를 피해갈 도리가 없었다 함

132) 『인조실록』 권30, 12년 12월 11일.
133) 한우근, 「조선 전기 사관과 실록 편찬에 관한 연구」, 「조선시대의 언권』, 한국학술정보(주), 2001년, 91~92쪽.

이다. 따라서 사관 스스로 자신들의 기사행위를 보호받기 위한 대응책을 강구해야 했는데, 그것이 무기명제였다.

예종은 즉위 후 부왕 세조의 실록을 하루빨리 편찬하고자 했다. 세조의 집권을 도왔던 한명회(韓明澮) 등도 다급한 심정은 마찬가지였다. 춘추관에 실록청이 마련되고 기명제를 강조한 가장사초 수납령이 내려지자 예종 원년(1469) 4월 11일 군신간에 기명·무기명을 둘러싸고 격렬한 논쟁이 벌어진다.[134] 사간원 헌납(獻納) 장계이(張繼弛)는 "역사는 직필을 귀하게 여깁니다. 지금 춘추관에서 사초를 거두어 놓고 각각 성명을 사초에다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초는 국가의 일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사대부의 선악도 기록한 것입니다. 사초에 성명을 쓰게 하면 사람들이 모두 호오(好惡)를 따를까 두려우며, 또 원망을 받을까 염려해 직필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라며 무기명제를 주장한다. 그러나 예종이 "수사(修史)란 선왕의 공덕을 후세에 전하는 의미도 있는데, 사대부의 잘잘못을 적는데도 눈치를 보며 직필을 하지 않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반박해 기명의 원칙이 재확인된다.

당시의 권력구조상 직필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무기명제가 최선임은 자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논쟁의 의미는 사관의 기명은 곧 직필을 전제로 한 것이며 그 직필은 사관의 권리이자 책임으로 인식되었다는 점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예종이 직필로 인해 생길지도 모를 후환이 두려워 기명을 하지 않는다면 수사의 예에 어긋난다고 한 말은 사관의 직필과 그 결과인 사초의 의미를 정확히 짚었던 것이라 할 수 있다.[135]

사초로 인해 일어났기 때문에 사옥(史獄)으로 불리는 민수사옥(閔粹史獄)은 기명제 논쟁 직후인 예종 원년(1469) 4월 24일 예종의 친국(親鞫)으로 시작된다.

세조 때 전임사관(검열)을 지낸 봉상시첨정 민수가 수납령에 따라 성명을 기입한 채 가장사초를 제출한 뒤 한명회 등이 『세조실록』을 편찬하는 실록청의 당상관으로 편성된 사실을 확인하고 그들에게 피해를 당하지 않을까 두려운 나머지 스스로 사초를 개서한 사건이 민수사옥이다. 당시 한명회 등은 익대공신(翊戴功臣)에 봉해지면서 재등장해 정치적 입장을 강화하던 때였다. 다급해진 민수는 전임사관(봉교) 이인석(李仁錫)의 집으로 찾아가 사초를 고치고 싶다는 뜻을 전달했으나 거절당하고 춘추관 기사관 강치성(康致誠)한테 부탁해 사초를 빼내어 개서한다. 그때 전임

134) 『예종실록 권5, 원년 4월 11일.
135) 오항녕, 위의 책, 324쪽.

사관(검열) 양수사(楊守泗)와 최철관(崔哲寬)이 민수의 사초에 개서가 있음을 발견하고 수찬관(修撰官) 이영은(李永垠)에게 알리고 이영은은 영의정 한명회 등 대신들에게 보고한다.[136]

당시 민수가 고친 곳은 한명회, 신숙주(申叔舟), 양성지(梁誠之), 홍윤성(洪允成), 윤사흔(尹士昕), 김국광(金國光) 등 세조 공신들에 대한 전횡과 비리 대목이었다. 그중 양성지에 대한 비판 대목을 보자. 그가 대사헌으로 재직 중 옥사가 있어 사헌부의 관리 모두가 좌천된 일이 있었는데, 사헌부의 최고 책임자(대사헌)였던 그는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으며 물러나지 않았다. 당시 민수는 그런 그의 태도를 '구용(苟容)'이란 표현을 써가며 비판적으로 사초에 올렸다.[137] 강치성에게 부탁해 빼낸 사초에서 민수는 '구용'이란 두 글자를 삭제했던 것이다.

친국 결과 민수는 장일백(丈一百)에 제주 관노(官奴)로 보내지고 강치성은 참형에 처해진다. 이인석과 최명손은 이 사실을 알고도 고하지 않아 장일백에 본관지(本貫地)의 군역에 편입되었다.

민수사옥을 계기로 춘추관에 제출된 모든 사초에 대해 개서 여부를 조사하게 되는데, 이때 원숙강(元叔康)의 사초에서도 개서 흔적이 발견된다. 이미 죽고 없는 세조 공신 권람(權擥)에 관한 것이었다. 한명회 등의 요구로 예종은 원숙강을 친국해 참형을 내린다.

민수가 참형을 면한 것은 예종의 세자 시절 서연관이었다는 점이 작용했을 것이고, 원숙강이 참형을 당한 것은 세조 공신들한테 미운 털이 박혀 그랬을 것이다. 세조 때 전임사관인 예문관 검열·대교·봉교를 역임한 뒤 예종 원년(1469)사간원 정언(正言)에 오른 원숙강은 '사초 기명제 반대' 전력을 갖고 있었다. 장계이가 '사초 무기명제'를 주장하며 예종과 논쟁을 벌이고 있을 때 원숙강이 불려가 "사초에 성명을 기입하는 것이 불가하다고 말한 것은 무엇 때문이냐"고 예종이 묻자 "신(臣)이 춘추관에 나가면서 사초를 보니 모두 사관의 성명을 써놓았는데, 신의 생각에 이와 같이 하면 원망을 들을까 두려워 직필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동료와 의논해 아뢴 것입니다"[138]라고 답했던 것이다. 원숙강은 수양대군(훗날 세조)이 홍보인(皇甫仁), 김종서(金宗瑞) 등을 죽이고 정권을 잡자 병을 핑계로 향리 원주로 돌아가 은거했던 원호(元昊)의 손자로, 세조 반대 집안의 손이었다. 원호는 세조의 호

136) 김경수, 『조선시대의 사관 연구』, 국학자료원, 1998년, 151쪽.
137) 김경수, 『언론이 조선왕조 500년을 일구었다』, 도서출판 가람기획, 2000년, 198쪽.
138) 『예종실록』 권5, 원년 4월 11일.

조참의(戶曹參議) 제수에도 응하지 않고 한평생 단종만 그리다가 죽었다. 손자 원숙강이 화를 당하자 원호는 자신의 저술과 소장(疏章)을 모두 불태워버렸다.

민수가 사초를 개서한 것은 세조 공신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음은 분명하다. 그렇다 하더라도 사초를 통해 한명회 등 권신들을 강력하게 비판한 그의 직필정신만큼은 재평가되어야 한다고 본다. 민수와는 달리 다른 사관들의 경우 권신들의 비행 등에 대해서는 아예 사초에 올리지 않아 화를 원천적으로 피해갈 수 있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민수사옥은 결국 직필정신을 강건하게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다 할 수 있다. 사관은 사초 기명 여부를 떠나 직필을 남겨야 하며, 나아가 사초에 기명하는 것이야말로 사관에게 직필의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는 쪽으로 이 사옥이 정리되었기 때문이다. 세조대의 정치 상황을 운위하기 이전에, 오히려 직필은 사관의 임무이자 권리임을 확인시켜 주었다는 점에서 이 사옥은 사관의 직능을 확립하는데 긍정적인 방향에서 처리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139] 이 사옥으로 적지 않은 사관이 희생되었지만, 꼭 부정적인 사태였다고만 볼 수 없는 것이 이런 이유에서다.

이후 인종·명종대에도 기명제 문제점이 제기되었으나, 예종 원년의 논쟁을 통해 확립된 기명제 원칙은 계속 유지되었다.

기명제를 채택하고 있는 현대 언론은 예종의 반박 논리를 확대·수용한 것으로 해석해도 될 것 같다. 현대 언론이 크고 작은 기사 모두에 대해 기명제를 원칙으로 삼고 있는 것은 '그 기사의 모든 것을 책임진다는 의사표시'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즉 문책(文責)의 표시로 기사 맨 끝에 기명을 하고 있는 것인데, 자신의 이름을 내걸고 기사를 작성하고 있는 만큼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기자의 정도(正道)를 걸으려고 최대한 노력하게 된다는 것이 현대 기명제의 목적이라 하겠다.

2) 기억운동과 무오사화

조선의 훈구파(勳舊派)와 사림파(士林派)는 고려 말 신흥사대부(新興士大夫) 세력의 후예들로, 본래 한 뿌리였다. 신흥사대부는 고려 말 권문세족(權門勢族)들의 부패한 정치를 개혁하고자 했던 새로운 정치세력이었다. 원(元)나라가 고려를 속국으로 삼자 이 이민족에 아부해 권세를 누렸던 세력이 권문세족이다. 비유하자면, 일제 강점기의 친일파와 같은 세력이라 할 수 있다.

139) 오항녕, 위의 책, 403쪽.

부패한 권문세족과 싸울 때 신흥사대부는 하나였지만, 그들의 고려에 대한 생각은 하나가 아니었다. 고려를 타도하고 새로운 국가를 개창하자는 급진 세력과 고려는 존속시키고 개혁만을 수행하자는 온건 세력으로 갈라진 것이다. 정도전·하륜·조준 등이 급진파의 대표 인물이었고, 정몽주·길재·이색 등은 온건파의 중심 인물이었다. 강경파가 항상 득세해온 한국 역사의 흐름처럼 두 세력 중 주도권을 장악한 세력은 급진파였다. 왜구 토벌 과정에서 두각을 나타낸 신흥 무장 세력 이성계와 손을 잡고 고려 왕실을 무너뜨리고 조선을 개국한 것이다.

조선 건국의 주도 세력인 역성 쿠데타파는 새 왕조에 참여해 고위 관직을 독점하고 공신전(功臣田) 등을 수여받아 새로운 지배층으로 떠오른다. 하지만 역성 쿠데타파는 내부 분열을 일으킨다. 칼로 세운 권력은 칼의 문제가 정리되어야만 안정되는 법이다. 이방원이 주도한 1·2차 왕자의 난은 바로 이런 칼의 문제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정변이었다. 하륜 등 이방원을 지지했던 세력은 공신이 되고 정도전 등 이방석을 지지하며 국가사회주의를 꿈꾸었던 세력은 역적으로 몰려 죽어간다. 정변은 그치지 않았고, 1453년에는 수양대군이 계유정난(癸酉靖難)을 일으켜 조카 단종을 내쫓고 정권을 장악해 세조가 되었다. 이때 수양대군을 도운 한명회·권람·정인지·양정 등은 공신이 되고 단종을 지지한 김종서·황보인 등은 역적이 된다. 조선이 개창된 1392년부터 1506년 중종반정까지 114년 동안 배출된 공신은 모두 9차례에 걸쳐 478명이었다. 이렇게 형성된 공신 집단에 고위 관직을 역임한 왕실의 외척 세력 등이 보태져, 그 부패의 정도가 고려 말 권문세족과 닮은꼴을 이루었던 세력이 훈구파다.[140]

온건파는 어떻게 되었을까. 그들은 자신들의 토지가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 학문을 닦으면서 중소지주라는 지위를 이용해 향촌사회를 장악하기 위해 힘쓴다. 80~90년 동안 향촌에서 세력을 기른 그들은 세조 때 문과에 급제한 김종직(金宗直)을 필두로 중앙 정계에 진출한다. 그들이 바로 집권 훈구파의 대항 세력인 사림파다. 김종직은 정몽주·길재·김숙자(金叔滋, 김종직의 아버지)의 성리학 도통(道統)을 이어받은 조선 사림의 조종(祖宗)이었다. 성종대에 이르면 김굉필(金宏弼)·정여창(鄭汝昌)·김일손(金馹孫) 등 김종직의 제자 집단이 대거 문과에 급제해 중앙 정계에 등장하게 된다.

이종범(조선대 사학과 교수)은 그의 저서 『사림열전 2-순례자의 노래』에서 훈구

140) 이덕일, 『당쟁으로 보는 조선 역사』, 석필, 1997년, 38~44쪽.

파와 사림파에 대한 구분 기준의 하나로 '기억운동'을 설정하고 구체적인 역사 사실을 제시해가며 논증하고 있는데, 사림파는 특정 시점의 특정 사건에 대한 과거의 기억을 억압하는 훈구파에 맞서 과거를 어떻게 기억하고 치유할 것인가에 대한 역사의식을 갖고 기억운동에 나섰다는 것이다. 역사가 기억하는 자의 것이라면, 또는 역사가 기억과의 싸움이라면, 혹은 역사가 집단의 기억이라 한다면 사림파의 기억운동은 암울한 과거에 대한 '역사를 향한 고발행위'로, 공포정치가 횡행하던 당시의 상황에서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일종의 지하운동 형태로 진행된 기억운동의 선구자는 세조 때 전임사관(봉교)을 지낸 뒤 성종 때 형조판서 등에 올랐던 김종직이었다. 그가 시묘(부친)하는 동안 세상은 요동을 치고 많이 변한다. 사육신의 상왕복위운동이 실패로 돌아가고 노산군으로 강등된 상왕 단종은 영월로 쫓겨났다가 몇 달 뒤 죽음을 맞는다. 세간에는 "시신을 강물에 던져버렸다", "영월의 호장이 시신을 들쳐 메고 사라졌다"는 등 풍설이 난무한다.[141]

공포의 시대에는 어두운 상흔의 기억이 숨은 노래로 나타나는 법이다. 김종직의 「조의제문(弔義帝文)」과 김시습(金時習)의 『금오신화(金鰲新話)』를 비롯한 여러 시문이 그 대표작이라 할 수 있다.[142]

김종직은 세조 3년(1457)「조의제문」을 짓게 게 된 연유를 서두에서 다음과 같이 밝힌다.[143]

> 정축년(세조 3년) 10월 어느 날, 내가 밀양에서 경산(京山, 지금의 성주)으로 가다가 답계역(踏溪驛)에서 잤다. 그날 밤 꿈에 칠장(七章)의 옷을 입은 신인(神人)이 나타나 "나는 초(楚)나라 회왕(懷王)의 손자인데, 우리 조부께서 항우(項羽)에게 죽임을 당해 침강(郴江)에 잠겨 있다"고 말하고는 사라져 보이지 않았다. 깜짝 놀라 깨어 생각하니 회왕은 중국 남방의 초나라 사람이고 나는 조선 사람이 아닌가. 거리가 만리나 떨어져 있고 시대 또한 천여 년이나 차이 나는데 그가 내 꿈에 나타난 것은 무슨 조화일까. 또 역사를 면밀히 검토해 보아도 강물에 던졌다는 말은 없으니 이는 아마도 항우가 심복을 시켜 몰래 쳐죽이고 그 시체를 물에 던졌는지 알 수 없는 일이다.

다음은「조의제문」의 본문이다.[144]

> 무릇 하늘이 사물과 법칙을 마련해 사람에게 주었으니 누가 그 사대(四大, 道·天·

141) 이종범, 『사림열전 2-순례자의 노래』, 아침이슬, 2008년, 46~47쪽.
142) 이종범, 위의 책, 21쪽.
143) 김세철·김영재, 위의 책, 147쪽.
144) 김세철·김영재, 위의 책, 147~148쪽.

地·王의 네 가지가 크다는 것을 뜻함)와 오상(五常, 仁·義·禮·智·信의 다섯 가지를 일컬음)을 높일 줄 모르겠는가. 중국 사람에게만 넉넉하게 주고 조선 사람에게는 부족하게 준 것이 아니며 어찌 옛적에만 있고 오늘날은 없다 하겠는가. 나는 조선 사람이고 천여 년이나 지난 뒤에 태어났지만, 삼가 초나라의 회왕을 슬퍼하노라. 옛날 조룡(祖龍, 진시황)이 어금니와 뿔을 휘두르니 사해(四海, 온 천하)의 물결이 모두 피로 물들었네. 비록 전어·상어·미꾸라지·고래인들 어찌 무사하겠는가. 그 죽음의 그림자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바쁘게 뛰었다. 당시 육국(六國, 秦나라에 망한 전국시대의 여섯 나라)의 후손들은 세력이 없어지고 초야로 피난해 평민으로 위장하고서야 겨우 목숨을 보존할 수 있었다. 항량(項梁)은 초나라의 무장 집안으로 진승(陣勝, 진나라의 2세 황제 때에 처음으로 반란을 일으킨 사람)에 이어 난을 일으켜 백성들의 뜻을 좇아 회왕을 옹립하고 멸망했던 초나라를 다시 세웠다. 회왕이 건부(乾符, 왕위)를 쥐고 천자가 되었으니, 천하에는 진실로 미씨(芈氏, 초나라의 성)보다 높은 이가 없었다. 장자(長子, 유방)를 함곡관(函谷關)에 들어가게 해 진나라를 치게 하니 그 어진 인의의 마음을 볼 수 있도다. 그러나 양처럼 성내고 이리처럼 탐욕해 관군(冠軍)을 함부로 죽였는데도 어찌 그 항우를 잡아 죽이지 않았는가. 아, 형세가 이미 기울어 회왕의 신변이 위태롭도다. 마침내 길러놓은 자에게 도리어 죽임을 당했으니 과연 천운이 어긋났구나. 침석산(郴石山)이 험해 하늘에 닿으니 어둑어둑 저물려 한다. 침수(郴水)의 물은 밤낮으로 흐르니 물결은 넘쳐서 돌아오지 않는다. 천지가 장구한들 한이 어찌 다하리. 넋은 지금도 정처없이 헤매고 있구나. 나의 마음은 쇠와 돌을 뚫을 만큼 굳으니 회왕이 갑자기 꿈에 나타난 것이로구나. 주희(朱熹)의 필법에 따라 삼가 공경하는 마음으로 가슴을 조이며 술잔을 들어 땅에 부으면서 조문한다. 바라건대 혼령은 내려와 흠향하소서.

「조의제문」은 '의제(義帝)를 조상하는 글'이란 뜻인데, 의제는 항우에게 죽임을 당한 초나라의 회왕을 일컫는다. 단종을 죽인 세조를 의제를 죽인 항우에 비유해 세조의 왕위 찬탈을 풍자한 저항문학으로, 굴원(屈原)의 초사체(楚辭體)를 본뜬 운문체로 되어 있다.

「조의제문」은 어느 한 구석에도 '항우는 세조이며 의제는 단종이다'는 암시를 주지 않고 있다. 그러나 '정축년 시월', 즉 단종이 영월에서 세상을 하직한 달에 지었음을 생각하면 의미는 판연히 달라진다. 그렇다면 '항우가 관군을 함부로 죽였다'는 구절은 세조가 김종서를 척살한 사실이 되고, '어찌 그 항우를 잡아 죽이지 않았는가'란 대목은 단종이 수양대군을 제거하지 못한 사실을 통탄한 것이라 해야 할 것이다. 또 의제의 시신이 잠겼다는 침강은 단종이 쫓겨나서 죽은 영월의 동강이 된다.[145]

단종의 죽음을 망각의 늪에서 건져 올린 김종직의 「조의제문」은 일종의 '격문성

145) 이종범, 위의 책, 49~50쪽.

지하유인물'로 사림의 주요한 언론활동의 하나였으며, 한국 역사는 물론이려니와 언론사상사적으로도 큰 의미를 지닌다. 그 글 통째로 군주와 집권세력의 정통성에 대한 문제 제기였기 때문이다. 그 글은 당시의 왕실과 그 주변의 집권세력을 근원적으로 비판·부정하는 뜻을 담고 있어 여간 민감한 사안이 아니었다. 그런 점에서 「조의제문」은 정권의 정통성 부정과 관련된 사림파의 언론활동 가운데 가장 상징적인 사건이라 할 수 있다.146)

「조의제문」에서도 확인되듯이, 김종직은 세조와 성종대에 벼슬하면서 항상 절의와 정의를 숭상하고 실천해왔는데, 그런 정신이 제자들에게 전해졌고, 실제로 그를 따르는 사림들은 절의를 높이고 정의를 중히 여기는 데 힘썼다. 그런 까닭으로 그는 사림의 정신적 영수가 될 수 있었다.

그렇다면 김종직을 '재야 사관'이라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가 문과에 급제해 벼슬에 나가기 2년 전인 27세 때 역사성이 매우 강한 저항문학인「조의제문」을 지었으므로 '재야 사관'이라 불러도 될 것 같다.

그렇다면 이제 사림의 영수 김종직을 역사의 공간에서 현실 공간으로 끄집어내 '기자의 영수'로 만드는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고 본다. 오늘의 기자들이 그의 '조의제문정신'을 불러내 정신의 양식으로 일용한다면 분명 한국 언론의 내일이 밝음으로 열려올 것이라 믿어지기 때문이다.

재야에서 시작된 사림파의 기억운동은 점차 조정을 무대로 전개된다. 성종 9년(1478) 4월 15일 남효온(南孝溫)은 현덕왕후(顯德王后)의 복위를 주장한다. '이미 왕이 아닌 노산군의 생모'라는 이유로 종묘에서 신주가 철거되고 문종의 능침에 묻힌 관곽(棺槨)이 파헤쳐진 사건을 거론한 것이다. 세자빈 시절 단종을 낳고 문종 즉위 이전에 세상을 떠난 그녀의 능침이 소릉(昭陵)이기 때문에 '소릉복위상소'라 한다. 왕실의 정통성을 훼손하고 도덕성을 추락시킨 세조 치세의 최대 약점으로 그동안 누구도 말하지 못했던 금기사항을 남효온이 깨뜨린 것인데, 역사의 상흔을 치유하려는 역사투쟁과 기억운동이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남효온은 당시 25세의 성균관 유생이었다.147)

세상이 원호·김시습·이맹전(李孟專)·조려(趙旅)·성담수(成聃壽) 등과 함께 생육신(生六臣)으로 불렸던 남효온은 벼슬을 단념하고 국토 순례를 하면서 39세로 생을 마감하기까지 거침없는 언설을 기후(忌諱)하지 않았다. 그가 생의 끄트머리에

146) 이상희, 『조선조 사회의 커뮤니케이션 현상 연구』, 나남, 1993년, 139~140쪽.
147) 이종범, 위의 책, 21~22쪽166쪽

서서 저술한「육신전(六臣傳)」은 사육신의 전기로, 각 인물의 성격이 잘 표현되어 있다. 정사(正史)에서 배척되어 매몰될지도 모르는 그들의 행적을 뛰어난 문장력으로 기술한, 역사의식과 문학성이 결합된 작품이다. 저술 당시 그의 문인들이 장차 큰 화를 당할까 두려워 말렸지만, 그는 죽는 것이 두려워 충신의 명성을 소멸시킬 수 없다며「육신전」을 세상에 내놓는다.

선조도 읽을 만큼 당대를 풍미했던「육신전」은 기억하지 못하면 미래가 없다는 역사운동의 깃발을 올린 것[148]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야인(野人)의 신분으로「육신전」을 저술했기 때문에 남효온 또한 '재야 사관'으로 불릴만하다.

전두환 군부독재가 한창이던 1985년 5월 광주에서도 '남효온의 육신전 현상'이 나타난다. 5·18 광주민중항쟁을 정면으로 다룬 기록물 가운데 최초의 단행본인『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가 지하출판되어 세상에 나오게 되는 것이다. 그 시기 5·18은 금기의 숫자였지만, 전남사회운동협의회가 전남대 학생운동권 출신인 이재의를 필자로 선정해 자료를 수집·정리해 갖다 주고 안가에서 집필하도록 했다. 한국 언론이 금기를 명분 삼아 깊은 침묵에 빠져 있는 사이 책은 5·18 광주를 홀로 말했던 것이다. 이 책도「육신전」처럼 널리 읽히면서 5·18 전국화 및 세계화에 큰 몫을 했다.

남효온에 앞서 7일 전, 그러니까 성종 9년(1478) 4월 8일에는 이심원(李深源)이 "세조의 공신은 물러나게 하자"[149]는 상소를 올린다. 효령대군의 증손자인 이심원의 상소는 훈구파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다. 훈구파인 한명회·임사홍 등이 반격에 나서 남효온과 이심원을 추국(推鞫)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성종이 "구언(求言)에 따른 언론을 처벌하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다"며 물리쳐, 두 사람은 위기를 넘긴다. 이때 성종은 한명회한테 따로 '저들의 망언을 믿지 않고 있다'는 전지를 보내는데, 이는 훈구파의 위세가 그만큼 막강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150]

남효온과 이심원의 상소는 훈구파의 두터운 장벽을 균열시키는 기폭제가 되었으며, 이후 훈구파의 권력 독점과 이기주의가 빈번히 언론의 도마 위에 오르게 된다. 언론을 담당하는 신진 관료(대부분 사림파)와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원로 중신(훈구파) 사이에 전선이 형성된 것이다. 이런 비판언론의 활성화에 힘입어 성종 치세 후반에 이르면 훈구파의 대안세력으로 사림파가 부상하게 된다.[151]

사림파의 기억운동은 종내 무오사화를 낳는다. 연산군 4년(1498) 7월『성종실록』

148) 이종범, 위의 책, 161쪽.
149) 이종범, 위의 책, 20쪽.
150) 이종범, 위의 책, 167쪽.
151) 이종범, 위의 책, 21쪽.

을 편찬하기 위해 실록청을 개설했는데, 실록청의 책임자급은 대부분 훈구파였으며, 실무자급은 사림파였다. 이때 훈구파 이극돈(李克墩)이 당상관으로 임명되어 실록청에 납입된 가장사초를 검토한다. 그는 사초를 검토하던 중 성종 때 전임사관(검열·대교) 김일손이 제출한 사초에 자신의 비리가 올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된다. 그가 전라감사(全羅監司) 재임 시 정희왕후 윤씨의 상을 맞았는데, 국장에 쓰일 향을 바치기는커녕 기생을 끼고 유람했으며, 부정축재도 했다는 것이었다. 이극돈은 나머지 사초를 검토하던 중 김일손의 스승 김종직이 작성한「조의제문」을 보고 실록청 총재관 어세겸(魚世謙)에게 알린다. 어세겸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자 유자광(柳子光)을 이용한다. 유자광은 세조의 신임을 받은 노사신(盧思愼)·윤필상(尹弼商) 등과 모의해 김종직이「조의제문」을 통해 세조를 비방한 것은 대역부도(大逆不道)한 행위라고 상계(上啓)한다. 평소 사림파의 간언(諫言)과 권학(勸學)에 염증을 느끼고 있던 연산군은 1498년 7월 12일부터 26일까지 김일손 등을 친국한 끝에 모두 김종직이 교사한 것으로 결론짓는다. 김종직의「조의제문」이 무오사화의 뇌관이 되었던 것이다.

김일손은 공초(供招)에서 사초에「조의제문」을 넣은 이유를 다음과 같이 진술한다.『연산군일기』권30 4년(1498) 7월 13일자 기사로 후대에 전해지고 있다.

> 사초에 '노산(魯山)의 시체를 숲 속에 던져버리고 한달이 지나도 염습하는 자가 없어 까마귀와 솔개가 날아와서 쪼았는데, 한 동자가 밤에 와서 시체를 짊어지고 달아났으니 물에 던졌는지 불에 던졌는지 알 수가 없다'고 기록하고, 이어서 '김종직이 과거하기 전에 꿈속에서 느낀 것이 있어「조의제문」을 지어 충분(忠憤)을 부쳤다'고 적고, 이어 김종직의「조의제문」을 썼습니다.

김일손이「조의제문」을 사초에 올린 것은 몰래 부르는 슬픈 기억의 노래를 내일을 향한 불멸의 서사로 살리겠다는 역사의식의 실천이었다. 기억하지 못하면 내일이 없고 올바른 기록이 없으면 시대의 아픔을 극복할 수 없다는 신념이 김일손을 역사투쟁의 선봉에 서도록 했던 것이다.[152] 다시 말하면, 세조의 왕위찬탈의 부당성을 역사에 남기고 그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동시에 당시 왕권의 정당성 또한 비판[153]하기 위해 명문「조의제문」을 역사 앞으로 차입했을 것이다.

김일손은 성종·연산군 때 체제에 대한 도전으로 비쳐지는 현덕왕후 복위를 3차례나 주장한 바 있으며, 소릉의 관을 파서 바닷가에 버렸다는 소문을 조문숙에게 듣고 사초에 올리기도 했다.[154] 또 세조 궁중 비사, 동요 후전곡(後殿曲), 학조(學

152) 이종범, 위의 책, 288쪽.
153) 이상희, 위의 책, 141쪽.

祖)의 비리, 세조 공신 권람 비판 등을 사초에 남겼다. 그밖에 황보인·김종서가 절개로 죽었다, 세조가 박팽년의 재주를 애석히 여겨 살리고자 신숙주를 보내어 회유했으나 듣지 않고 죽었다, 이개·최숙손이 서로 이야기한 일 등도 사초에 실었다.[155]

김일손의 사관 관련 행적 등은 그것만이 아니다. 그는 "사초의 완실(完實)을 기하자면 국왕의 용모나 안색을 살펴야 하니 사관이 엎드리지 말고 앉아서 기록할 것"을 제안해 관철시켰다. 이주와 함께 올린 이 제안은 사관의 사초 작성의 여건을 개선하자는 것이었다. 또 사관의 확대를 주장했으니 "기주가당인(記注可當人)으로 춘추록(春秋錄)을 작성해 이들로 하여금 지방의 시사(時事)를 기록할 수 있게 하자"는 '지방 기주관'의 신설을 주장했다. 이 제안은 훈구에 의해 거부되었다. 이런 과정에서 그는 이극돈과 성준 등의 훈구대신을 '권귀(權貴)'로 탄핵하기도 했다. 물론 훈구의 반격도 만만치 않았다. "늙고 병든 김종직에게 가마와 인부를 보내자"고 건의했다가 "사사로운 은혜를 나라의 재물로 갚는다"고 탄핵을 당하고 일시 유배를 가기도 했다. 이렇듯 훈구·사림 갈등의 한복판에 김일손이 있었던 것이다.[156]

권경유(權景裕)와 권오복(權吾福)도 사초에서「조의제문」을 논한다. 권경유는 김종직의「조의제문」은 '충의가 격렬해 보는 자가 눈물을 흘리는데 그에게 있어서 문장은 여사(餘事)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으며, 권오복은 김종직의「조의제문」은 '간곡하고 측은하며 침착하고 비통해 남이 말할 수 없는 바를 말했으므로 사림 사이에서 전해 외었으니, 세교(世敎)에 관계되므로 썩지 않게 오래 남겨둘만하다'고 했다.[157]

김종직의 제자들은「조의제문」을 어두운 과거를 기억하게 하는 역사투쟁의 훌륭한 교재로 받아들였고, 훌륭한 도의의 기록문학으로 평가하며 훗날까지 온당하고 빛나게 전해지길 원했다.[158] 그동안 억압당하고 부정되었던 소수의 사적 기억을 공식화·국가화하려 했던 것이다.[159]

사림파는「조의제문」으로 인해 그 뿌리가 뽑혀질 만큼 많은 희생자를 내게 된다. 이미 죽은 김종직은 대역부도의 수괴로 지목되어 부관참시형(副棺參試刑)을, 김

154) 박홍갑, 위의 책, 225쪽.
155) 박홍갑, 위의 책, 222~228쪽.
156) 이종범, 「기억공간으로서의 길: 15세기 후반 사림의 여행과 소통」, 『역사와 경계 69』 2008년 12월호, 부산경남사학회, 92~93쪽.
157) 『연산군일기』 권30, 4년 7월 17일. 이종범, 『사림열전 2-순례자의 노래』, 아침이슬, 2008년, 87~88쪽 재인용.
158) 이종범, 위의 책, 88쪽.
159) 이종범, 위의 책, 22쪽.

일손을 비롯해 권경유·권오복은 세조를 욕보였다고 해 능지처참형(陵遲處斬刑)을, 이목(李穆)·허반(許磐)은 참수형을 당한다. 강겸(姜謙)은 가산을 몰수당하고 관노가 된다. 표연말(表沿沫)·홍한(洪澣)·정여창·강경서(姜景敍)·이수공(李守恭)·정희량(鄭希良)·정승조(鄭承祖) 등은 '조의제문'에 동조했거나 불고지죄로 삼천리 밖으로 유배되었다. 이종준(李宗準)·최부(崔溥)·이원(李黿)·이주(李胄)·김굉필·박한주(朴漢柱)·임희재(任熙載)·강백진(姜伯珍)·이계맹(李繼孟)·강혼(姜渾) 등은 모두 김종직의 제자로서 붕당을 이루어 국정을 비방하고「조의제문」의 삽입을 방조한 죄목으로 유배되어 봉수(烽燧)와 노간(爐干)의 역을 졌다.

한편 어세겸·이극돈·유순(柳洵)·윤효손(尹孝孫)·김전(金銓) 등은 수사관(修史官)으로서 문제의「조의제문」을 보고도 고하지 않은 죄로 파면되었으며, 홍귀달(洪貴達)·조익정(趙益貞)·허침(許琛)·안침(安琛) 등도 같은 죄로 좌천되었다.

무오사화는 정치사적 측면에서 보면 훈구파와 사림파 두 세력간의 충돌이었는데, 오히려 언론사적으로, 또는 언론사상사적으로 더 큰 비중을 갖는다. 많은 사림이 정치적 제물이 되긴 했지만, 이 땅의 역사 공간에 기억운동 및 역사투쟁의 전범(典範)으로 우뚝 솟아올라 있는데다, 그 과정에서 김일손·권경유·권오복 등은 죽음이 예견되는데도 사관정신을 꼿꼿하게 세워 저항했기 때문이다.

희생자 가운데 김일손의 사관정신은 조선 사관의 표상으로 부족함이 없다. 연산군의 심문에 서슴없이 "그런 모든 일(사초에「조의제문」넣기 등)을 기록하는 것은 사관의 전통적인 의무"라며 의연하게 죽음을 예비했던 데서도 그 표상을 살필 수 있다. 그는 이처럼 '사관의 기록'을 '사관의 의무'로 여기고 사관정신을 조선 역사기록의 제단 위에 기꺼이 바쳤던 것이다. 그의 강하고 높은 사관정신을 지금의 기자들이 우러러 본받아 기자정신의 맨 밑자리에 거름처럼 깔아둔다면 한국 언론의 발전은 지금보다 더 큰 속도를 내게 될 것이다.

『연산군일기』에는 무오사화의 공초와 함께「조의제문」까지 실려 있다. 그렇다면 훈구파는 현실에서는 이겼으나 역사에서 진 것이 분명하다. 그 반전의 한복판에 '두려움 없는 사관정신'이 자리하고 있음을 본다. 오늘의 기자에게 그 반전은 어느 만큼의 크기로 닿아올 것인가, 그것이 문제다.

제5장 결 론

제1절 연구의 요약

지금까지 조선 사관을 제도적 시각에서 이해하기 위해 맨 먼저 사관의 자격 요건·선발 절차·직제·특권 등에 대해 개략적으로 살펴보았다. 그 뒤 '성리학적 역사인식'과 '춘추필법으로서의 역사 기록'이 사관정신의 사상적 배경을 이루고 있음을 밝혔다. 이어 조선 사관이 '조선 역사의 초침적(秒針的) 기록원'으로서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군주, 또는 권신에게 대항해가며 어떻게 사관정신을 발휘해 왔는지 저항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해보았다.

조선사회의 구심점을 이루었던 선비는 덕치주의와 민본주의로 요약되는 조선왕조의 성리학적 통치이념을 바탕으로 인격적 완성을 도모했으며, 이 통치이념은 선비의 역사관에도 영향을 미쳐, 그들은 역사를 통해 과거의 삶에 대해 윤리적 심판을 내리고자 했다. 사관의 자격 요건이나 선발 절차를 보더라도 사관은 '선비 중 선비'였던 만큼 성리학적 이념의 실천 의지가 그 누구보다 강했다. 그런 출생 배경을 안고 있는 조선 사관은 직필과 춘추필법을 붓의 강령으로 삼고 때로는 목숨까지 담보했는가 하면, 군주가 "제발 기록하지 말라"고 당부한 말까지 기록하는 엄정함을 보이기도 했다. '사실대로', '있는 그대로 바르게 쓴다'(직필)는 것보다 더 굳세고 바른 필봉은 없다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사관은 국왕에게 꺼끄러기 같은 존재였다. 사관이 역사라는 붓을 들고 국정 현장에 입시하는 것 자체가 왕권에 대한 견제 기능을 했기 때문이다. 그런 까닭에 국왕은 할 수만 있다면 사관 입참을 원천봉쇄하려 했다. 사관 또한 국왕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따라가려 했기 때문에 둘 사이는 늘 불편한 관계였다.

사관의 입시범위 확대 투쟁은 중종대에 이르러 사관의 승리로 거의 마무리되지만, 그 과정은 가시밭길이었다. 정사가 이루어지는 정전과 편전만 해도 애초에 '사관 출입문'을 열어둔 것이 아니었다. 굳게 닫혀 있는 것을 사관정신이 활짝 열어젖혔던 것이다. 정전의 경우 사관이 소속해 있는 예문춘추관에서 상소를 올려 태조 이성계가 즉위한 지 두어 달 만에 열리도록 했다.

'승지의 사관겸임론'을 펴가며 유독 전임사관을 멀리하려 했던 태종의 경우 결국

은 편전까지 내주고 마는데, 태종과의 다툼이 별나게 잦았던 전임사관은 민인생이었다. 그가 편전 입참을 시도하다 태종의 꾸지람을 듣고 한 명언 "사관 위에는 하늘이 있습니다"는 '백성이 곧 하늘(天)'이라는 뜻이다. 민인생은 편전에 있는 태종을 문밖에서 엿보다 들켜 귀양을 갈만큼 사관정신이 출중했다.

사관의 국청 및 정청 진출은 입시범위 확대 투쟁 가운데 가장 돋보이는 성과에 속한다. 국청 입시가 본격적으로 논의된 것은 성종 20년(1489) 9월이었는데, 성종-사관·언관의 대결은 10월까지 이어진다. 결국 기사관 이주와 남궁찬 등의 사관정신과 사관을 지원한 언관의 압박에 성종이 백기를 들면서 사관 쪽의 역전승으로 일단락된다.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역모사건을 다루는 국청에까지 사관이 입참해 취재 영역을 확대한 것은 자유언론사상으로 지탱되고 있는 오늘의 민주국가체제에서도 수용하기 힘든 성과물로, 한국 언론사에 큰 족적을 남긴 것으로 평가받아야 할 사건이다. 하지만 낯부끄럽게도 오늘의 기자에게 국청은 언제까지 강 건너 불구경이어야 하는가. 아무 상관이 없는 곳으로 방치해두고 있음에 주목할 일이다.

정청 진출 또한 조선의 이변에 해당하는 사건이다. 성종 10년(1479) 윤10월 전임사관 전력을 지닌 안윤손이 첫 정청 입참 발의를 한다. 인사 논의 과정에 참여해 취재하겠다는 것으로, 사필로 정청 인사를 감시하겠다는 선언이라 해야 할 것이다. 사관의 붓이 감시자로 기능하게 되면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었다.

그 후 연산군 3년(1497) 기사관 이유녕의 발의로 정청 입참 논쟁이 재개되었으나 무산되고 만다. 정청 입참 발의가 참극을 불러온 것은 연산군 10년이었다. 이현보는 신진으로서 국사를 논했다는 이유로 국문을 당하고, 갑자사화 때 이미 참형을 당한 이유녕은 다시 시신의 뼈를 부수었는지 확인하라는 처분을 받는다.

정청 입참은 중종 10년(1515) 마침내 이루어지지만 그 후에도 변화를 겪는다. 일단 그것이 정당하다고 사회적으로 인정받은 점에 의미를 두어야 할 것이다.

군계일학 같은 정청 출입 사관은 중종대의 전임사관 백인걸로, 그는 이조에서 매우 꺼려했을 정도로 부지런히 정청에 드나들었던, 지조 있는 인물이었다. 그 백인걸이 오늘의 기자한테 호소하고 싶은 말이 있을 것이다. 정청 또한 출입금지구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이다.

비공식 정사나 행사도 조선 사관의 주요 취재 대상이었다. 비공식 만남에서도 국정과 함께 사적인 일이 논의될 수 있고, 참언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

었다. 신하 쪽에서 요청해 이루어지는 군주와의 독대와 군주가 신하를 불러들여 만나는 인견의 경우 사관의 입참은 윤대보다 어려웠는데, 사관 등의 주도로 수차례 격론을 거듭한 끝에 성종대에 독대 불가에 대한 관료사회의 합의를 이끌어낸다.

지금은 독대나 인견이 공식적인 만남으로 굳어져버린 듯한 세상이 되고 말았다. 독대·인견이 이루어져도 오늘의 기자사회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서다.

전임사관 민인생은 행행에서도 '거침없는 사관정신'을 내보인다. 이 또한 상대는 태종이었다. 매사냥을 갔을 때 얼굴을 가리고 따라나섰는가 하면, 노루사냥을 하다 낙마했을 때는 "이 사실을 사관이 알지 못하게 하라"는 말까지 사초에 올려 『태조실록』에 실리게 했던 것이다. 이 사건은 사관의 기록정신을 웅변하는 사례로 곧잘 인용되고 있다.

정전 등 입시 때 '후입선출'로 고정된 출입질서를 깨기 위한 사관의 도전은 세종대부터 강도 높게 진행되며, 입시 위치 및 입시 자세 개선 논쟁 또한 함께 이루어진다. 잇따른 문제 제기에도 결국 '후입선출'이란 관행을 뛰어넘지 못하지만, 입시 자세만큼은 전임사관 이주 등의 건의를 성종이 받아들여 "이제부터 사관은 앉아서 일을 기록하라"고 명을 내림에 따라 조선 개국 100년 만에 편안한 기록 자세를 취할 수 있게 된다.

승지-사관의 갈등관계는 양자의 직무의식에서 형성된 것으로, 그 대립의 대부분은 승지가 전임사관의 입시를 막는 데서 비롯된다. 승지 쪽이 사관을 막으면서 전가의 보도처럼 애용한 말은 "승지도 사관을 겸하고 있으므로"였다. 세종 5년 "승지가 계사(啓事), 또는 왕명을 출납할 때 사관이 따라 들어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는 분부가 내려졌는데, 그 후에도 국왕이 승지를 불러들일 때 승지가 사관을 자주 물리쳐, 갈등관계는 지속된다.

사초는 국왕조차 함부로 열람할 수 없었다. 사관의 직필을 보장하기 위해서였다. 사초는 또 국왕의 마음에 맞도록 쓰라거나 고치라고 할 수 없었으며, 사초에 기록된 내용은 누설하거나 자의 또는 타의에 의해 개서할 수도 없었다. 실록도 사초처럼 열람이 제한되었다.

그러나 일부 군주의 안달증으로 인해 사초 및 실록 열람이 종종 이루어지고 만다. 태조의 사초 열람, 태종의 『태조실록』 열람 요구, 세종의 『태조실록』 열람 등이 그 사례들이다. 그때마다 사관 등은 거세게 저항했고, 세종 6년(1424) 마침내 '사초관리 원칙'을 마련하게 된다. 이 원칙으로 사초는 국왕의 전교에 해당하는 국서의 지위에 오른다.

사관집단은 사초 기명제를 '신분 보장이 안 되어 소신껏 쓸 수 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자신들의 기사행위를 보호받기 위한 대응책을 강구해야 했는데, 그것이 무기명제였다. 예종 원년(1469)『세조실록』을 편찬하기 위해 기명제를 강조한 가장사초 수납령이 내려지면서 기명·무기명을 둘러싸고 군신 간에 격렬한 논쟁이 벌어진다. 이 논쟁으로 기명의 원칙이 재확인된다. 이 기명제가 민수사옥을 일으킨다. 세조 때 전임사관을 지낸 봉상시첨정 민수가 사초 수납령에 따라 성명을 기입한 채 춘추관에 제출했다가 피해를 보지 않을까 우려해 사초를 개서한 사건이 민수사옥이다. 친국 결과 민수는 제주 관노로 보내지고, 사초를 빼내준 춘추관 기사관 강치성은 참형에 처해진다. 그때 원숙강의 사초에서도 개서 흔적이 발견되어 참형을 당한다. 민수가 사초를 개서한 것은 비판감이지만, 사초를 통해 한명회 등 세조 공신들을 질타한 그의 직필정신만큼은 재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지하운동으로 진행된 사림의 '기억운동'은 조선 사림의 조종 김종직의 명문「조의제문」이 그 출발점이다. 단종을 죽인 항우에 비유해 세조의 왕위 찬탈을 풍자한 이 글은 사림의 주요한 언론활동의 하나로 간주되고 있으며, 한국 역사와 함께 언론사상사적으로 큰 의미를 지닌다. 그 글 통째로 군주와 집권세력의 정통성에 대한 문제 제기였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그 글은 정권의 정통성 부정과 관련된 사림파의 언론활동 가운데 가장 상징적인 사건이라 할 수 있다. 김종직은 그 글을 관직에 나가기 직전에 썼으므로 그를 '재야 사관'으로 대우해도 무리는 아닐 것 같다.

재야에서 시작된 사림의 기억운동은 점차 조정으로 확산되면서 종내 무오사화를 낳는다.「조의제문」이 그 뇌관 구실을 한다. 성종 때 사관 김일손이「조의제문」을 사초에 올린 것이『성종실록』편찬 과정에서 발견되어 '대역부도한 행위'로 몰린 것이다. 김일손은 세조의 왕위 찬탈 부당성을 역사에 남기고 정통성을 부정하기 위해「조의제문」을 역사 앞으로 차용했을 것이다. 조선 사관의 표상으로 일컬어지는 그는 연산군의 심문에 "그런 모든 일(사초에「조의제문」넣기 등)을 기록하는 것은 사관의 전통적인 의무"라며 의연하게 죽음을 예비했다.

사림파의 뿌리가 뽑힐 만큼 많은 희생자를 낸 무오사화는 정치사보다는 오히려 언론사, 또는 언론사상사 쪽에 더 큰 비중을 두어야 할 것이다. 기억운동 및 역사투쟁의 대표적 상징일 뿐 아니라, 죽음 등 고난의 길이 예고되어 있는 극한상황에서도 사관정신을 마치 춘추필법처럼 세워 표출했기 때문이다.

요컨대, 조선 사관은 역사 기록의 영역을 확대하고 사초 작성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부단히 저항한 끝에 중종대에 이르러 그 걸림돌을 대부분 제거했으며, 세조의

왕위찬탈이란 금기마저 역사의 공간으로 끌어오려다 무오사화라는 피를 불러왔던 것이다.

제2절 조선 사관 및 사관정신이 우리 언론에 주는 함의

사관=기자라는 등식이 성립되고 있음에 대한 사실적 근거는 서론에서 충분히 제시했다. 그렇다면 한국 언론의 사상적 배경을 어디서 찾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는다. 이는 그 뿌리에 대한 물음이다. 그것은 우리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 오랜 저항 끝에 쟁취한 역사 과정에서 찾아져야 한다고 본다. 본론에서 여러 저항 사례를 통해 조선 사관의 사관정신에 대해 살펴보았듯, 오늘의 기자들이 기자정신의 교과서로 삼을만한 '정신체계'가 사관정신 속에 녹아들어 있음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논문은 조선 사관의 사관정신을 한국 언론사상의 원조(元祖)로 내세우려 한다.

조선 사관이 기본적·공통적으로 품고 있는 사관정신(언론사상)을 본론에서 기술한 것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첫째, 언론사상 가운데 으뜸의 가치를 지니는 자유언론사상과 관련해 조선 사관은 직필정신(춘추필법)과 함께, '역사 앞에 누구도 예외일 수 없으며, 역사 기록을 담당하는 사관의 영토는 무제한이어야 한다'는 등 신념체계가 확고하다는 것이다. 이는 그들의 걸작품인『조선왕조실록』을 유심히 읽다 보면 곳곳에서 발견된다.

현대 언론의 경우 언론사 안팎의 사정으로 인해 '예외'도 두고 보도 영역에 '성역'을 갖고 있음이 언론 소비자들 눈에 적잖이 비쳐지고 있는데, 이는 자유언론의 가치를 스스로 절하시키는 처사라 할 수 있다.

둘째, 조선 사관은 민의를 하늘의 뜻으로 알고 백성을 주인으로 섬기는 민본주의를 신봉했는데, 이 언론사상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우리만의 고유한 언론 철학으로, 우리 민족의 위대한 문화유산이다. 사관 민인생의 명언 "만일 곧게 쓰지 않는다면 위에 하늘이 있습니다"의 '하늘'도 '백성'이다.

오늘의 기자에게 '백성'은 '하늘'일 것인가. 이 물음 앞에 한국 기자정신이 당당하게 대답할 수 없다면 조선 사관에게서 '붓의 정신'을 빌려와야 한다.

셋째, 훗날 예문관 대제학에 오른, 지경연사 조박은 사관의 첫 경연청 입시를 반기며 국왕을 향해 "군주가 존립할 수 있는 요건은 하늘(天=理)과 사필을 반드시 지

키는 것이다. 하늘이 지켜야 할 질서라면, 사필은 그 질서의 준수 여부를 살피는 감시자"라는 발언을 했는데, 국왕에게는 '압박'으로, 사관에겐 '고무'로 닿아오는 이 명언은 군주-사관의 질서를 잘 표현한 언론사상이라 하겠다.

오늘의 기자가 '지독한 질서 감시자'로 역할하려면 조박의 경구를 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

넷째, 대사헌 김양경이 종친연에 사관이 입참하지 못한 것을 문제 삼으며 "국왕의 언행은 모두 정도(正道), 즉 공적이고도 객관적인 표준이 되는 것이며, 사적 영역은 없다"고 성종을 공격한 말은 그의 언론사상을 잘 드러낸 발언이라 하겠다. 그는 심정적으로 사관인 셈이다.

조선 사관은 국왕의 잠자리까지 취재하려 한데 비해, 오늘의 기자는 대통령에게 상당 부분 사적 영역을 허용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다섯째, 우의정 등을 지낸, 당시 82세의 윤지완 또한 사관정신으로 무장한 듯한 발언을 했다. 숙종 때 좌의정 이이명의 독대가 이루어지자 이이명을 가리켜 "대신(大臣)은 국왕의 사신(私臣)이 아니다"고 논박한 것이다. "군주와 신하의 관계는 나라를 매개로 맺어진 공적 관계이지 사적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나라의 공적 행위는 해처럼 밝아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다.

나라의 공적 행위가 해처럼 밝지 않은데도 오늘의 기자정신은 해찰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 적이 한 두 번이 아닌데, 그때마다 언론 소비자들이 내뱉는 말은 "답답하다"다.

조선 사관의 언론사상에 한국 기자정신의 오늘을 이렇게 잠깐만 비춰보아도 초라하기만 한데, 그 출구는 없는 것인가. 기자정신의 위기가 한국 언론의 위기를 불러오고 그것들이 다시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로 이어진다고 볼 때, 한국 언론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자정신 세우기'가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하겠다. 경험칙(經驗則)상, 기자정신만 단단하다면 한국 언론의 위기를 상당 부분 헤쳐 나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기자 외적 위기라 할지라도 기자정신으로 단단히 무장해 대처한다면 어렵지 않게 위기를 퇴치할 수 있다 함이다. 문제는 기자 내적 위기다.

강조하건대, 기자정신을 세우려면 사관정신을 오늘로 길어 올려 그것에 동화하려는 노력 외에 별다른 효과적 방도는 없을 것이다. 온갖 풍파를 이겨내고 쌓아올린 사관정신 속에 기자정신으로 충전할 가치가 높은 요소들이 듬뿍 담겨 있을 뿐 아니라, 역사만큼 가르침의 효과가 큰 것이 없기 때문이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우리 역사 속에 좋은 자원이 있는데 굳이 서양 쪽 정신이나 사상에 기댈 것까지 없다는 생각에서다.

그렇다면 그 작업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사학 및 언론 학계와 한국기자협회 등 기자단체 등이 맨 앞에 나와 사관정신을 철학적(언론사상)으로 체계 있게 정립해나가는 작업부터 서둘러야 할 것이다. 그 다음은 그것을 교재로 삼아 '기자정신 세우기' 교육에 들어가는 것도 방책일 수 있다. 가령, 한국언론재단 쪽에서 현역 기자를 대상으로 '조선 사관정신'에 관해 집단교육을 할 수도 있겠다. 또 '신문방송학' 관련 학과를 설치해두고 있는 대학에서는 '조선 사관정신' 관련 과목을 운영해도 좋을 것이다.

한편, 이 논문은 조선 사관 및 사관정신에 관한 몇 안 되는 관심이라는 데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렇지만 극히 초보적인 수준이어서 상당한 한계를 갖는다. '사관정신'에 대한 개념도 명확히 정리하지 못하고 있으며, 저항 사례 또한 충분하지 않고, 개개의 사관정신에 대한 분석도 그리 명쾌하지 못하다. 이 논문을 토대로 더 심도 있는 연구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참 고 문 헌

1. 자 료

『조선왕조실록』(인터넷: http://sillok.history.go.kr.), 국사편찬위원회.
『국역 연려실기술』, 민족문화추진회.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동아세계대백과사전』, 동아출판사.

2. 논 문

차장섭,「조선 전기의 사관」,『경북사학』제6집, 경북대학교 사학과, 1983년.
이종범, 「기억공간으로서의 길: 15세기 후반 사림의 여행과 소통』, 『역사와 경계 69』2008년 12월호, 부산경남사학회.

3. 단행본

김경수,『언론이 조선왕조 500년을 일구었다』, 도서출판 가람기획, 2000년.
김경수,『조선시대의 사관 연구』, 국학자료원, 1998년.
김세철・김영재,『조선시대의 언론문화』, 커뮤니케이션북스, 2000년.
박홍갑,『사관 위에는 하늘이 있소이다』, 도서출판 가람기획, 1999년.
박홍식,『현대인의 유교 읽기』, 아세아문화사, 1999년.
오항녕,『한국 사관제도 성립사』, 일지사, 2009년.
이상희,『조선조 사회의 커뮤니케이션 현상 연구』, 나남, 1993년.
이성무,『조선의 부정부패 어떻게 막았을까』, 청아출판사. 2000년.
이덕일,『당쟁으로 보는 조선 역사』, 석필, 1997년.
이종범,『사림열전 2-순례자의 노래』, 아침이슬, 2008년.
최봉영,『조선시대의 유교문화』, 사계절문화사, 1997년.
최승희,『조선 초기 언관・언론 연구』, 한국문화연구소, 1976년.
한우근,「조선 전기 사관과 실록 편찬에 관한 연구」,『조선시대의 언권』, 한국학술정보(주), 2001년.

4. 언론매체

구교태,「현장 포커스」,『신문과 방송』2005년 4월호, 한국언론재단.

김용삼,「조선시대의 사관 이야기」,『월간조선』2007년 5월호.

이덕일,「이덕일 舍廊」,『조선일보』, 2007년 6월 17일자.

이재경,「한국 저널리즘의 3가지 위기」,『신문과 방송』2004년 4월호, 한국언론재단.

저작물 이용 허락서

학 과	신문방송학과	학 번	20027052	과 정	석사
성 명	한글: 나 의 갑 한문: 羅 義 甲 영문: Na Eui Kap				
주 소	광주광역시 동구 운림동 라인아파트 101동 902호				
연락처	ekna@dreamwiz.com				
논문제목	한글 : 조선시대의 사관과 사관정신 연구 영문 : A Study on Chronicler and Chronicler's Consciousness in the Chosun Dynasty				

본인이 저작한 위의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 아래 조선대학교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동의합니다.

- 다 음 -

1. 저작물의 DB구축 및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망에의 공개를 위한 저작물의 복제, 기억장치에의 저장, 전송 등을 허락함
2. 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편집・형식상의 변경을 허락함. 다만, 저작물의 내용변경은 금지함.
3. 배포・전송된 저작물의 영리적 목적을 위한 복제, 저장, 전송 등은 금지함.
4. 저작물에 대한 이용기간은 5년으로 하고, 기간종료 3개월 이내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저작물의 이용기간을 계속 연장함.
5.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출판을 허락을 하였을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대학에 이를 통보함.
6. 조선대학교는 저작물의 이용허락 이후 해당 저작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타인에 의한 권리 침해에 대하여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
7. 소속대학의 협정기관에 저작물의 제공 및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저작물의 전송・출력을 허락함.

동의 여부 : 동의(○) 반대( )

2010년 2월 25일

저작자: 나 의 갑 (서명 또는 인)

조선대학교 총장 귀하